

융합시장의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이 보고서는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융합시장의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7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책임연구원 :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정인숙(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성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원 : 김현정(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Contents

목 차

요약

vii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저작권 일반론 및 방송영상저작물 관련 특칙

- 1. 저작권 일반론4
 - 1) 저작물 4
 - 2) 저작권 6
 - 3) 저작권의 발생 및 등록 9
 - 4) 저작권의 보호 11
 - 5) 저작인접권 13
 -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14
- 2. 방송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 16
 - 1) 방송, 전송 등의 개념정의 16
 - 2) 방송사업자의 권리 17
 - 3)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9

III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저작권 분쟁의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 1. 방송분야 저작권 관련 주체들 24
 - 1) 방송사업자 24
 -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26

2. 유료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 사례	29
1) 분쟁이 완료된 사례	29
2) 분쟁 중인 사례	31
3)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사례	43
4) 분쟁의 지형도	45
3. 유료방송 시장의 저작권 분쟁 원인	46
1) 해외 수준의 저작료 인상 요구	47
2)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구조의 문제	50
3) 매출액 베이스의 지급 구조 문제	51
4)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 문제	52
5)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규정	54
4.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1) 방송법과 저작권법상의 개념의 차이	55
2) 영상물특례조항 제100조의 해석 모호성	56
3) 저작인접권 주체간의 권리 불균형 문제	58
4)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문제	60
5)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7조) 규정의 문제	61
6)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조항	62
5. 융합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63
1) IPTV의 성격 규정 문제	63
2) 재가공 저작권의 문제	67
3)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70
6. 융합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 및 개선방안	71
1)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71
2) 저작권법의 개정	74
3)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신설	75
4)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 있는 정책	77
7. 논의의 종합 및 문제점	79
1) 방송분야 저작권 관련 주체들	80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80
3) 유료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 사례	80
4) 유료방송 시장의 저작권 분쟁 원인	81
5)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2
6) 융합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84
7) 융합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 및 개선방안 ..	84

IV

해외의 저작권 사례

1. 미국	87
1) 미국 저작권법의 특성	87
2) 저작권 분쟁 사례	89
2. 일본	102
1) 일본 저작권법의 특성	102
2)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111
3. 영국	112
1) 영국 저작권법의 특성	112
2)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113

V

방송영상물 관련 저작권 문제의 쟁점과 정책적 해결방안

1. 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의 관계	116
1) 문제의 소재	116
2) 이해관계인들의 주장	117
3) 정책적 시사점	118
2.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저작권료 및 음악사용료 지급관행의 변화가가능성	121
1) 문제의 소재	121
2)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견해	121
3) 음악저작권자의 입장	122
4) 정책적 시사점	123

3.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창구) 규정의 적용 문제	123
1) 문제의 소재	123
2) 이해당사자의 견해	124
3) 정책적 시사점	125
4.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에 대한 법적 개념 확정문제	127
1) 문제의 소재	127
2) '전송' 개념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128
3) IPTV 등 디지털방송 관련 예상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30
5.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신설 문제	131
1) 문제의 소재	131
2)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신설 및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32

VI

결 론

VII

부 록

표 목 차

[표 3-1] PP 저작권 TF의 저작권 현안 대응방안 수립	28
[표 3-2] 유료방송 시장에서 분쟁이 완료된 저작권 분쟁 사례	30
[표 3-3] 방송 시장에서 진행 중인 저작권 분쟁 사례	32
[표 3-4] 한국방송실연자협회 vs PP 저작인접권료 협상 건	35
[표 3-5] 저작권법 제 107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54
[표 3-6] 방송과 전송 법 조항 비교	56
[표 3-7] 저작권법 특례조항 제100조	57
[표 3-8]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	58
[표 3-9]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60
[표 3-10] 저작권법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62
[표 3-11]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63
[표 3-12] 방송영상물관련 저작권 분쟁사례 요약	81
[표 4-1] 방송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내용	103
[표 4-2] 일본에서의 저작권 개정 시기 구분	105
[표 4-3] 일본의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전·후 비교	107
[표 4-4] 영국의 저작물 범위	113
[표 5-1] 개인정보 침해유형	126

Contents

그림 목 차

[그림 3-1]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의 관계	25
[그림 3-2] 방송분야 저작권 관련 주체들의 관계도	27
[그림 3-3]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계도	34
[그림 3-4] 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 지형도	46
[그림 4-1] 미국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의 권리	88
[그림 4-2] 일본의 지적 재산권 체제	102
[그림 4-3] 일본 저작권법 상 용어의 정의	104

요 약 문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미디어 융합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저작권 분쟁의 현황을 정리하고 사례별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 담긴 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모두 현재 한국의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상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의 저작권문제 이외에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과 융합시장에서의 저작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당해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법제 정비와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집적하는 것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과제이다.

현재 미디어시장은 디지털화와 멀티미디어화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법률과 규제기관이 칸막이 식으로 분화되어 있어 그 규제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미디어 시장의 현황, 그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시장에서의 저작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제 정비 방안은 고사하고 당사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유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의 저작권 관련 갈등상황을 반드시 저작권의 문제로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의 차원 내지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루어 관련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아울러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미디어시장의 특수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다른 모든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일반적인 법원칙이 존재하지만 방송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에 적합한 특별한 규제원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시장은 지상파광고시장이 다른 광고시장보다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유료방송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이 매우 협소하였다. 또한 저작권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관계 역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의 분쟁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료방송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상파방송시대의 공익성의 원리와 지상파위주의 저작권 정책에는 매우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상파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유료방송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전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인정범위와 그 정도에 일정부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어느 편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공정경쟁과 사업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완전외주제작의 경우에는 외주제작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완전 외주형 계약’, 즉 방송사업자 측에서 인력, 음악, 영상, 시설 등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인도하는 형태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외부적으로 보기에 외주제작사가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방송사업자가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의 지위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취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통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저작권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익의 적정배분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저작권자 및 음악저작권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케

이블PP의 단가 선정 및 저작권료와 음악사용료 지급 관행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케이블방송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저작권료 및 음악사용료 지급관행은 당해 방송사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음악이 어떻게 언제 사용되었는지, 또한 당해 음악이 전체 프로그램 나아가 방송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모두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지급되는 저작권료 중 음악관련 저작권료가 방송사업자의 사업이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따라서 음악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들 간의 수익배분방법은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와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저작권료와 음악사용료 지급관행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금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정보를 보상금수령단체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채택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청구의 전제조건으로서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상대방(저작물 이용자) 측이 과연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조치를 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수령단체 측에서는 과금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감정보는 IPTV 등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안과 보호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을 통해 과금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과 전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주관부서인 문화부와 IPTV, 디지털 방송 등의 주무부서인 방통위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디지털음성송신 정의에는 영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IPTV는 디지털

음성송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방송사가 영상을 제외하고 영상을 제외하면 VOD, AOD, 실시간 등을 송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이나 전송이나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영상항목을 제외하면 다양한 이용형태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료의 차이 때문에 방송 보다는 전송의 개념에 속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저작권사용자는 이를 방송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IPTV상의 서비스들에 대해 방송인지 또는 전송인지의 개념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저작권 주관부서와 IPTV 등 디지털방송관련 주무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사용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정부정책은 지나치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환경 하에서 저작권법은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역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이를 이용하는 주체 간의 원활한 거래와 적정한 대가산정·지급업무 및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융합시장의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이에 따라 국민은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데 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민법 등 재산관련 단행 법률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재산권 중의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헌법과 단행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단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 보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함으로써 문화국가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구별되는데 방송분야에서는 사업자들 간에 주로 ‘저작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다매체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콘텐츠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디어 융합으로 인해 플랫폼별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프로덕션 간의 외주 제작 불공정거래로 인한 양사업자간의 갈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외주 제작 의무편성 비

을 조정 정책만으로 제작 시장의 다변화나 제작 역량의 강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빈번히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현재 방송 산업은 효율적인 인센티브 할당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그동안 방송사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따라 증가하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주정책을 활용한 반면에 외주 제작사는 스타지대의 인상전략을 통해 방송사로부터 A급 생산요소를 지속적으로 이동시켜 왔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인센티브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환경 변화는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방송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갈등은 IPTV와 UCC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유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CCL의 적용 문제와 DRM 강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 또한 크다. 동시에 프로그램 제작자와 플랫폼, 네트워크 간의 콘텐츠 공정이용 관련 불공정거래도 상세하게 법제화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현업에서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융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아울러 입법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뉴미디어 시장을 포함하여 현재 방송시장에서 제기되었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저작권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래법적 관점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한 입법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현황과 관련 시장에서의 저작권 분쟁사례와 이슈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지금까지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이슈는 주로 지상파 플랫폼과 외주 제작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에는 이 이외에도 각 미디어 사업주체별로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각 미디어 주체들이 어떠한 저작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핀다.

둘째,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방송시장의 특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본다.

다른 모든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일반적인 법원칙이 존재하지만 방송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에 적합한 특별한 규제원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방송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을 살펴보고 그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셋째, 방송시장에서의 저작권 침해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저작권법 적용의 문제를 다룬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송시장에서는 저작권 침해사태가 다수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침해사태별로 현재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및 구체적인 저작권법의 적용 방안과 미래법적 관점에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향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논한다.

본 연구는 방송학과 법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 분야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학, 저작권법학 등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관한 법리, 저작권 분쟁에 대한 판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국내법의 체계적 적용을 위한 유형화를 시도할 것이다.

Ⅱ 저작권 일반론 및 방송영상저작물 관련 특칙

1. 저작권 일반론

1) 저작물

(1)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화,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둘째,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대외적인 표현물이어야 한다.

이처럼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문학적이든 학술적이든, 혹은 예술적이든 개인의 독창성이 엿보이는 것으로서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의 수준에 관계없이 저작권은 내포되어 있으며, 저작권은 어떤 절차나 방식이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 즉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저작물을 선택하여 창작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편집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도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그것을 작성한 사람 역시 저작자가 될 수 있다.

(2)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어문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강의, 설교, 축사 등 구술에 의한 저작물이 있다.

- 음악저작물 :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가곡, 가요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연극저작물 : 무용, 연기 등의 실연의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태를 말한다.

- 미술저작물 :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해당된다.

- 건축저작물 :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 사진저작물 : 일정한 영상에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서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의 저작물을 말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저작권

(1) 개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의 일곱 가지 권리로 세분된다. 요컨대,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공표권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3)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 공연권 :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극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 방송권 :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 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

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전송권 :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권리소진의 원칙).

다만,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 배포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대여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대여권)를 가진다고 규정하여(저작권법 제80조), 권리소진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권의 발생 및 등록

(1)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제도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다만 저작권도 등록제도는 있으며 저작권이 등록(저작자의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일)되면 등록된 내용이 사실로 법률상 추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저작권등록

①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②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 추정력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

정을 받는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긴다.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50년에서 공표 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 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저작권의 표시

저작권의 표시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 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④ 저작권의 소멸사유

- 보호기간이 만료한 경우
 -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시와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최후사망자의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계속적 간행물이 무명 또는 이명이나 단체명의저작물 등인 경우에는 공표시 기산주의를 취하되,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순차적인 간행물의 경우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최종부분으로 본다.

-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 단체 등이 해산된 경우

- 권리 포기의 경우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명문규정은 없으나 자신의 저작권이 타인의 질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질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저작권의 보호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 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 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제39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제40조 제1항), ②업무상저작물(제41조), ③영상저작물(제42조)의 저작재산권은 사망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문화 발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위해 적절히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 근거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이런 헌법 규정에서 출발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크게 ①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②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 있는 기관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정 허락제도의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제35조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저작물의 방송(제51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52조) 등이다.

이들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공탁하여야 한다.

5) 저작인접권

(1) 의의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위에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2) 내용

저작권법은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연출자, 지휘자 등)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와 이러한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그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러한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또,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복제하고 중계방송 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 음반제작, 방송을 기획하는 사람은 각 실연, 음반제작, 방송에 앞서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록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①그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②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 침해중지의 청구 : 침해에 대한 정지나 예방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설정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위의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거나 채권적 성질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위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서는 침해 사실의 증명으로 족하고,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자는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여기서 침해되는 권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적 성질의 이용권도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는 고의나 과실, 권리의 침해, 손해, 침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재산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달리 하고 있고, 재산권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손해액 추정의 규정과 부정복제물 부수추정(출판물의 경우에 5000부, 음반의 경우에 10,000매)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예컨대, 신문에의 사과 광고 게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

(2) 형사적 구제

- 권리의 침해 죄
 -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발행등의 죄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 위탁 관리업을 한 자,
 -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그 점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명시 위반등의 죄

-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 중개의 저작권 위탁 관리업을 한 자와 영업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범죄는,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탁 관리업을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 중개의 위탁 관리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될 수 있다.

2. 방송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

1) 방송, 전송 등의 개념정의

공중송신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디지털음성 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	--

“방송”은 “1대 다수 및 동시성을 띤 공중에 대한 일방향 송신”을 특징으로 함에 반하여, “전송”은 “저작물을 파일 형태로 등록(upload)·송신·다운로드받는 형태로서 1대 송신 및 1대 다수 송신, 이시성, 쌍방향적 정보 유통,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한편, 디지털기술의 발달, 방송통신 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으로는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어 방송 및 전송, 새로운 융합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방송사의 방송물 동시 웹캐스팅(Simulcast) 등 실시간 음악 웹캐스팅이 방송인지, 전송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점을 감안, 이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저작권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 방송사업자의 권리

(1) 저작인접권자로서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전파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크므로 그러한 행위에 일종의 정신적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에 인접하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저작물의 복제 및 전파 수단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들이 입는 경제적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기태, 2006).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제84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제85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복제권

먼저 녹음에 의한 복제란 방송을 청각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뜻하고, 녹화에 의한 복제란 연속되는 영상을 시각 및 시청각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진에 의한 복제란 방송을 정지한 상태의 시각적 유형물로 고정한 것을 말하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이란 녹음·녹화·사진을 제외한 방법으로 방송을 복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 때문에 재방송에 있어서 시간대를 달리 하여 이루어지는 재방송에는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이 작용하면 되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계방송만을 별도의 권리로 규정한 것이다(김기태, 2006).

(3) 동시중계방송권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재방송은 복제권을 적용하면 되지만 동시적인 재방송, 즉 동시중계방송의 경우에는 복제권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 권리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동시중계방송이란 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가 수신하여 동시에 중계하는 재방송 형태로서, 동시중계방송권이란 자기 방송사에서 행하는 방송에 대해 다른 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허락 없이 행하는 동시중계방송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김기태, 2006).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동시재송신의 경우,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의무재송신의 경우는 시청자 이익을 중심으로 한 공익적 사용을 인정하여 저작권상의 보상을 면제하는 ‘법정허락’을 통한 강제허락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3)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 관련 규정

•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 영상저작물의 특성

현행 저작권법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 때문이다. 즉,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된 것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영상제작자를 비롯한 감독·프로듀서·촬영기사·아트디렉터·연기자 등의 실연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종합저작물이다.

이렇게 하나의 영상저작물에는 다수의 권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까닭에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 허락과 관련해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영상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권리자들의 권리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영상저작물에 관여한 각종 권리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김기태, 2006).

(3)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개관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해서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첫째,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둘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
- 셋째,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 넷째,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다섯째,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여기서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란 소설이나 각본 같은 어문저작물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려는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이 중 영상제작에 해당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영상제작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영상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그것을 제작한 사람은 원저작권과는 별도의 새로운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가 원저작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저작물의 이용편의를 위해 영상제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김기태, 2006).

① 저작물의 각색

영상화의 허락에는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여기서는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각색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각색을 “영상화에 알맞도록 개작하는 것”이라고 보아 영상화의 허락을 얻은 음악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을 영상제작에 적합한 형태로 편곡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각색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영상제작에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영상화의 기본적인 과정인 각색 또는 변형하려면 일단 영상제작에 따른 허락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각색은 어디까지나 영상제작을 위한 목적 때문에 허락된 것이므로 각색 그 자체를 별도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으로 보아 영상화와는 다른 새로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작물을 각색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창작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원저작물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훼손해서 원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오히려 저작인격권의 침해요인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각색에 해당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김기태, 2006).

② 저작물 복제 및 배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영상화의 허락이 있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제작된 영상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권리도 함께 영상제작자에게 허락된 것으로 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저작재산권자가 영상저작물이 제작되어 그 2차적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에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용관계가 복잡해 질 염려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함에 있어서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영상제작자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보장한 것이다(김기태, 2006).

③ 공개상영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저작물에 대한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도 허락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공개상영’이란 극장 또는 강당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영상저작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또한 공연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공연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개상영이 필수적인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공연권에 따른 허락문제가 대두되므로 이를 영상화의 허락에 포함한 것이다.

④ 방송

저작재산권자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저작물을 영상화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제작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까지 포함 된 것으로 본다. 이는 방송권이 복제권·배포권·공연권과 함께 별도의 권리이므로 이용에 따른 충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방송을 목적으로 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목적이 방송이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송권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김기태, 2006).

⑤ 번역

특약이 없는 한 영상화의 허락에는 제작된 영상저작물을 당초의 이용방법에 따라 번역해서 이용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이는 영상저작물의 수입 또는 수출에 있어서 외국어를 우리말로 또는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영상저작물에 더빙하거나 자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Ⅲ.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저작권 분쟁의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1. 방송분야 저작권 관련 주체들

1) 방송사업자

신탁권리단체와 방송사업자는 음악,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저작인접권자가 가지고 있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기타 보상청구권에 비해서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만을 행사하고 있다. 주요 방송사업자로는 지상파, 케이블, IPTV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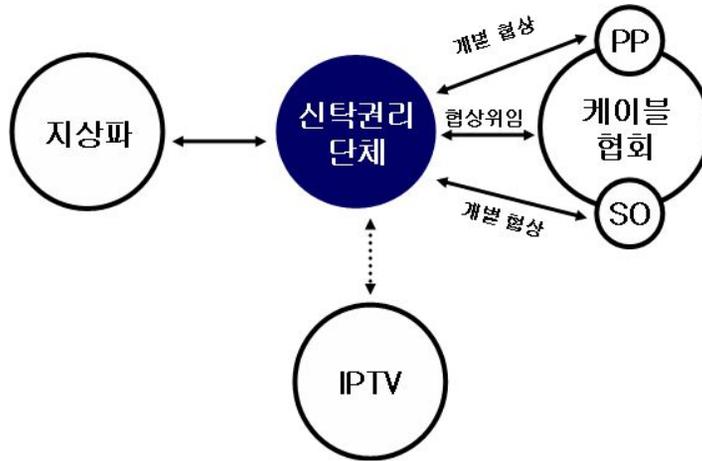
현재까지 저작권 분쟁의 중심문제는 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신탁권리 단체 간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케이블 사업자가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뉴미디어 방송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지상파 방송사 이외에 다양한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와 신탁권리단체 간의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저작권 분쟁 논의의 핵심은 케이블TV사업자이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권리자와 이용자인 개별 PP와 SO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PP와 SO가 신탁권리단체와 개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블 TV협회에 협상 위임을 하고 있기도 하다. 개별협상에 의하든 케이블TV협회 측에 위임하든 간에 모두 저작권 관련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지난 2008년 상용화된 IPTV는 아직 저작권법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탁권리단체 혹은 개별 저작권 권리자와의 이해관계가 표면적으로 대두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저작권을 둘러싼 방송사업자와 권리단체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방송사업자와 신탁관리단체의 관계



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에 대해 제기하는 주요한 문제는 주로 다른 저작인접권자에 비해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 소수의 저작인접권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방송사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송출하기 위해서 기울인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송권이 추가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저작권법상 전송권이 신설되어야만 최근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다운로드 등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뷰, PP H).

한편 저작권의 권리자 혹은 이를 신탁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서는 현재의 사용료 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수준과 비교해볼 때 현재의 저작권료 징수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국내 방송시장이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징수 기준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우 초기 도입 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 사용료 징수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제도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음악저작권을 두고 제기되는 논의들로서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단체

및 사업자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1) 방송분야 저작권 관련 주체들

현재 방송시장에서 방송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음악저작권 관련 분야이다. 현재 방송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와 진행 중인 대부분의 분쟁이 음악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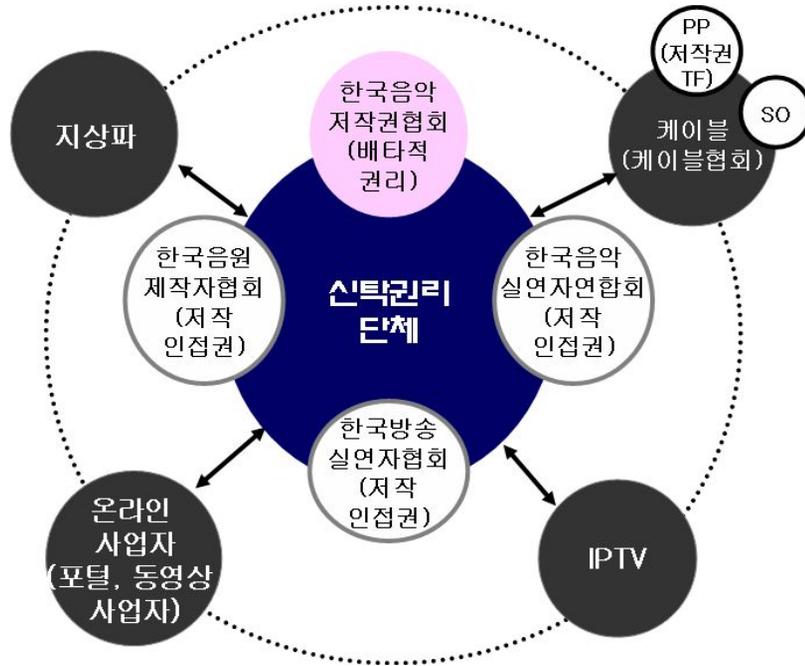
개별 권리자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하는 국내 3대 신탁저작권 권리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이하 ‘음실연’: FKMP),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KAPP)이다.

이 중 음저협은 본 저작자의 신탁관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 반면 음실연이나 음제협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음저협은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인 음실연이나 음제협은 사용한 것에 따른 민사소송만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소유 형태의 차이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중 방송사업자와 가장 협상력이 있는 단체는 음저협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과 같은 방송사업자들이 이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사용료 요율 및 징수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분쟁관계에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음저협과, PP 역시 음악 사용량이 많은 음악채널을 중심으로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잦은 분쟁 관계에 있다. 이제 유료 방송 시장에 진입한 IPTV의 경우는 음저협과 구체적인 사용료 지불 기준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작권법 상에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쟁관계에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편 지상파방송사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위의 신탁관리 단체와의 관계 외에도 프로그램의 제작자일 경우 TV화면이나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경우와 관련하여 케이블사업자나 포털 사업자와 저작권의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방송분야 저작권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방송분야 저작권 관련 주체들의 관계도



(2) 케이블 PP의 저작권 TF 구성

저작물의 이용 시에는 본래 저작권 이용자와 저작권 권리자 간의 개별 계약이 원칙적이나, 방송사업자의 경우 협회가 이를 위임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개별 지상파 방송사업자(KBS, MBC, SBS)와 신탁권리 단체가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하고, 방송협회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케이블의 경우는 PP와 SO가 케이블협회에 협상을 위임하여 음악저작권의 사용료 징수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PP의 경우는 저작권 TF팀을 구성하여,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관련 사업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법무법인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신탁권리단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PP 저작권 TF의 저작권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들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PP 저작권 TF의 저작권 현안 대응방안 수립

현안	내용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① KOMCA사용료징수규정 개정 협회안 마련 및 대외 개진 (2005~) ② KOMCA사용료합리화를 위한 ‘곡당 정액제’등 개선방안 마련 (205~) ③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관 KOMCA 징수규정 개정 의견 청취 회의 참석 및 의견 개진(2005. 7. 5) ④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KOMCA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2006. 3.17) a. 조정내용: KOMCA의 과도한 저작권료 청구에 대한 합리적 해결 b. 참가 PP회원사(법인 수): 29개 c. 조정 기간: 2006. 3. 17~7.18 d. 결과: 조정 취하 후 TF가 KOMCA와 음악저작물 방송사용 계약 체결 ⑤ KOMCA의 PP에 대한 전송사용료 요구 관련 방어(2006~): 실시간방송(streaming) 등 준방송서비스에 대한 전송사용료 미 부과 달성
방송협회의 ‘PP회원사의 지상파 방송화면/동영상사용 중지’ 요구 관련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2007. 3.29)	- 전 PP회원사에 지상파 콘텐츠 사용 시 유의 내용으로 안내 공문 발송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하‘음제협’) 및 (사)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이하 ‘음실련’) 등 음악저작인접권 단체와 보상금 및 전송사용료 관련 협상 및 계약 체결 주관	① 홈쇼핑-음악저작인접권단체간 보상금 지급계약 체결(2006. 9) - 전송사용료 포함 보상금의 연도별 상향 지급 합의(2004~2012) ② 저작권위원회 주최 음제협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청취 회의 참석 및 의견 개진(2006. 9. 27)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관련 대응방안 마련 (2007 ~)	① 내용 a. 방송실연자(성우 포함)의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관련 특약 체결 b. 공공채널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보상금 미청구 달성 c. 아래 PP 외 연예/오락/여성/다큐/교양/정보 PP에 대한 계약 체결 지연 중 ② 계약PP: 온미디어, CJ미디어, MBC드라마넷, 애니메이션 PP (대교 어린이TV, 재능방송, 애니원 등)
‘아프리카TV’등 온라인 사업자 저작권 침해관련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2006. 7. 협회명의 협조요청 공문발송 등)	

북한 방송저작물의 국내 사용 관련 협상 진행	① 대상: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권리자) vs PP(YTN, mbn, 한국 경제TV, KTV, 국회방송 등) ② 결과 : PP 특성을 고려, 할인된 수준에서 계약 체결
'Music Farm Inc.'의 홈쇼핑 채널 대상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발행 등 저작(인접) 주장 사업자에 대한 대응(안) 마련(2004. 8. 17)	

PP 저작권 TF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주된 현안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음저협(KOMCA)과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대한 건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방송실연자협회와의 보상금 문제, '아프리카TV'와 같은 온라인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 등 다양한 저작권 주체들 간의 분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유료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 사례

1) 분쟁이 완료된 사례

유료 방송시장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저작권 분쟁은 주로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케이블 PP와의 분쟁이다. 지난 2004년 음악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을 두고 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음원제작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간의 분쟁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홈쇼핑 채널과 한국음원제작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간의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2007년에는 투니버스, 챔프, 재능 등의 애니메이션 채널과의 분쟁이, 2008년에는 온미디어, CJ미디어, MBC미디어플러스와, 그리고 공공채널인 KTV, NATV, USB등과 분쟁이 있었다.

최근에는 지상파 3사와 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2009년 4월 17일자로 저작권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나서 당사자 간의 조정 합의가 진행 중이다. 과거 분쟁이 되었던 저작권 사례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유료방송 시장에서 분쟁이 완료된 저작권 분쟁 사례

발생연도	분쟁 사례
09년	- 지상파 3사와 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 관련 저작권 위원회 조정결정
08년	- 온미디어, CJ미디어, MBC미디어플러스와 방송실연자협회간의 분쟁 - 공공채널(KTV, NATV, USB 등)과 방송실연자협회 간의 분쟁 - 기타 자체제작이 존재하는 독립 PP와 방송실연자협회 간의 분쟁 - 온미디어 계열 방송의 판도라 TV, 기타 웹하드에서 불법유통물 차단 공문
07년	- 투니버스, 챔프, 재능 등 애니메이션 채널과 방송실연자협회 간의 분쟁
05년	- 홈쇼핑채널과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협회 간의 분쟁 - 지역민방(제주방송, 강원민방)과 합의 후 고소 취하
04년	- 케이블TV방송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협회 간의 분쟁

o 사례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vs. 지상파 3사

지상파 방송 3사와 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2009년 4월 17일 저작권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된 후 합의 중에 있다(문화부 중재안 조정조서, 부록 참고).

지상파 3사는 소송까지 간적은 없었다. 작년에 문화부에서 중재안이 나온 것이 있는데, 방송사에서 거부해서 저희가 조정애 들어간 것이다(음저협).

(중재안이) 2008년 2월에 나왔는데(문화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요율을 인상하려고 했다. 당시 저희 협회의 경우 음악 관리비율을 보면 국내 회원이 9,600명, 외국은 38개국과 상호관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97.8%는 관리하고 있었다(음저협).

이러한 음저협과 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서상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것이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저협 측은 방송은 포괄계약(협회에 신탁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에 허락을 맡는 대신 자유롭게 사용하고, 대신 분기별로 사

용료를 내는 시스템)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용량도 많고 현재 협회가 관리하는 것이 97%이기 때문에 현행 인상 조정안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방송사측은 실제 방송한 곡 중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곡만 저작권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o 사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vs. 지역민방(제주방송, 강원민방)

2005년 지역민방인 제주방송과 강원민방 개국 시 지역 민방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무단으로 권리를 사용하는데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곧 합의를 한 후 취소하였다.

신규방송사였던 지역민방의 경우, 제주방송과 강원민방이 저작권 해결해야하는 것을 몰랐는데 저희가 고소를 한 적이 있다. 개국한 2005년쯤인가. 합의를 한 후 취하였다(음저협).

그밖에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이하 음실연: FKMP)의 경우도 저작권 관련하여 많은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중에는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쟁 중인 사례

현재 방송사업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MTV(M.net)과 음원제작자협회 간의 방송사용보상금 소송이 있다. 음악채널에 대해 음저협이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 합의 중에 있다. 또한 지상파라디오와도 조정이 결렬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방송시장에서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표 3-3>과 같다.

[표 3-3] 방송 시장에서 진행 중인 저작권 분쟁 사례

발생연도	분쟁 사례
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M.net과 음원제작자협회간의 방송사용보상금 소송 진행(MTV 사례) - 지상파방송사와 SO 간의 디지털방송에서의 저작권료 징수 분쟁 - 지상파 라디오와 음원제작자협회 간 저작권료 징수 분쟁 - 방송실연자협회와 온미디어 간의 IPTV 진출에 따른 저작권료 추가 징수 분쟁

o 사례 1: 한국음원제작협회 vs. MTV(PP)

음제협이 보상금을 두고 3개 음악 채널 중 MTV(pp)와 조정 합의 중에 있다. 음제협은 과거 케이블TV협회와 포괄계약형태로 단체 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PP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분쟁 소송으로 법원에 제소되었으나 현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 받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음제협이랑 실연권 관련(저작권접권)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케이블 TV협회와 저작권 인접권단체와 단체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음제협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료의 인상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요구하는 인상 수준이 너무 커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2004년 기준으로 (음저협 대비) 8.9%였던 것을 (음저협 대비) 60%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폭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PP L).

약 2년 전(2007년 혹은 2006년) 음제협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어 각 PP가 저작권 분쟁소송을 했으나, 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 받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PP L).

음악채널이 3개있는데(MTV, 채널V, KMTV), 채널V는 다른 PP와의 합의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KMTV는 온미디어로 인수됨에 따라 현재 MTV와만

조정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KOMCA 대비 8.9%로 합의해서 KOMCA가 받고 있는 금액의 8.9%를 받고 있으나 점차 이를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2009년)는 40%, 내년(2010년)에는 50%, 궁극적으로는 60%까지 KOMCA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음제협).

○ 사례 2: 한국음원제작협회 vs. 지상파라디오

한국음원제작협회와 지상파라디오 간에 조정이 결렬되어 음제협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음실연과의 공동 소송으로 진행할지의 여부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음실연 측에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단독으로라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상파라디오와도 조정이 결렬 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매출액의 0.18%였는데, 저희(음제협)가 2%까지 달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지상파라디오에 대한 소송 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음실연과의 협의 여부를 결정 중이다. (소송은) 9월쯤 할 듯하다(음제협).

○ 사례 3: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vs. PP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는 현재 PP에 대해 보상금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 실연자의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저작권법 제75조) 행사와 관련해 방송사업자와 수시로 보상금 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 결렬시 저작권위원회 조정 및 소송을 진행하며, 최근에는 일부 케이블 PP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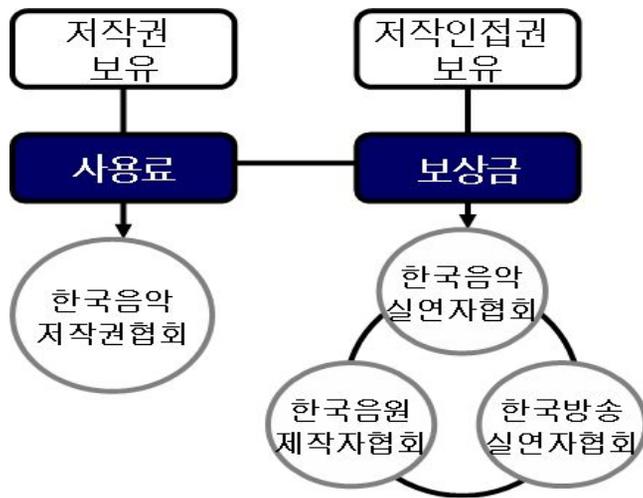
PP와는 현재 음실연 측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과거 3년 것을 받고, 2007년 것 가지고 하든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하겠다는 입장이다(음제협).

(저희 단체의 회원들은)저작권접권자로 인정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저작권위원회의 조

정을 거치게 된다(음실연).

음악채널 PP와 ‘판매음반 징수 요건에 관한 건’ 중 뮤직 비디오와 관련하여 음악이라는 입장(음실연)과 영상이라는 입장(PP)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정 결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림 3-3]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계도



(판매음반 징수 요건에 관한 건)말 그대로 음반은 음이 수록된 매체를 의미하는데, 뮤직비디오는 영상이 수록되어 있어 음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음실연)에서는 간접적인 판매음반으로 보고 있어 대립하고 있다(음실연).

조정결과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에는 음반과 영상을 구분하지 않은 음반(멀티미디어음반)이 추세인데,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조항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든지 정의 규정 조항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정의 규정 2조나 75조를 보완하는 방법)(음실연).

○ 사례 4: 한국방송실연자협회 vs. PP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텔런트, 성우, 개그맨인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로 방송실연자의 방송권과 복제권,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권리와 관련하여 다큐, 교양, 여성 채널과 같은 일부 PP에 재방송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PP 저작권 TF팀은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저작인접권료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상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한국방송실연자협회 vs PP 저작인접권료 협상 건

1. 방송실연자연협회 회원구성 및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구성: 텔런트, 성우, 희극인(개그맨) ○ 보유권리: 방송실연자의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p>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p>	
2.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 여성, 교양채널 등에 대한 단체 협상 요구 ○ 협상요구채널 :예당엔터테인먼트, 씨유미디어, 이채널, HMX동아TV, 지텔레비전, YTN(사이언스TV), 중앙방송, 리빙TV, 석세스TV, 유로TV(육아TV)
3.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한 협상을 지연하되, 필요시 상기 채널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협상 결렬 유도 필요(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73조)
<p>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4. 검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권 협상과 관련한 협상주체 2) 방송실연자협회와 기존 MPP와의 계약 사항 3) 저작권 TF회의 결과

출처PP저작권TF

이 중 PP저작권 TF측의 검토사항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첫째, 저작권 협상과 관련한 협상주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 현재 협회가 회원사를 대행하여 저작권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1월 회의

결정).

- 이와 관련하여 방송실연자협회는 (케이블협회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회원사와 직접 협상코자 함.
- 실연자협회는 케이블TV협회가 저작권인접권료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실연자협회 및 관계노조(성우협회, 탤런트협회 등)와 연계한 케이블TV 출연 거부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함.

둘째, 방송실연자협회와 기존 MPP와의 계약 사항과 이와 관련된 향후 협상 의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기존 MPP와 방송실연자협회는 법률자문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인접권료를 지급한 상태임.
- MPP는 협회에서 전달한 법률자문 결과에 대하여 내부 사정상 방송실연자협회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치 않고 있어 지급하는 비용이 크지 않은 관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음(성우, 탤런트의 출연관계).
- 차기 계약부터는 협회의 법률자문결과를 근거로 각 사의 유리한 입장에서 저작권료 협상을 추진키로 함.

마지막으로 PP 저작권 TF회의 결과, 먼저 중소 규모의 PP사의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큰 비용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됨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각 사의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저작권료는 각사의 입장이 다르므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각 사별 입장에 맞추어 저작권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였다.

PP에 대한 방송실연자협회의 요구를 법률적 조항을 근거로 현안을 파악해보면¹⁾, 먼저 방송실연자협회가 요구하는 저작권 제73조(방송권)는 실연자의 방송권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 내 ‘녹음’과 ‘방송’ 이 각각 ‘녹화’와 ‘재방송’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협회 회원사 중 일부는 성우, 연기자, 희극인 등의 저작권인접권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 다음은 법무법인 ‘Y’와 PP저작권 TF팀 간에 오간 메일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협상을 진행 중이다. 즉 애니메이션을 주로 방송하는 채널(투니버스, 재능방송, 대교방송, 애니원TV 등) 및 자체 제작물을 주로 방송하고 있는 채널(온미디어, CJ미디어, MBC드라마넷, 엠넷미디어)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채널(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 및 교양·정보·여성·다큐 채널(중앙방송, YTN, 이채널, GTV, 리빙TV, 육아방송)과는 특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성우실연자의 재방송료가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실연자협회’)의 화두이며, 실연자협회 측의 논거는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영상물 특례규정)에 따른 특약 체결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73조와 제103조 제3항 사이의 우선 적용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동법 제73조 단서와 103조 제3항 중 방송권에 관한 부분 사이의 우선 적용순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학설이나 판례에서는 명쾌하게 정리된 바가 없다. 그러나 법 73조 및 제103조 제3항의 문언해석상 제73조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103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저작권법상 영상물제작자는 성우 실연자에 대하여 재방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재방송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우 실연자가 재방송료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즉 성우 실연자가 저작권법상 재방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실연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송권은 방송법상 규정된 모든 종류의 방송(유/무선 불문)과 관련하여 생방송, 녹화방송, 재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방송을 목적으로 녹음한 성우의 실연에 대해서는 제73조 단서가 적용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성우 실연자가 저작권법상 방송권의 일환으로 재방송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재방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저작권법상 ‘방송’의 범위에 재방송이 포함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저작권법상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그 정의 자체에서 최초의 송신에 한한다고 볼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재방송 역시 ‘방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i) 동일 방송사업자가 하는 재방송은 제73조 제3항 단서의 방송에 포함되지만, 다른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은 제73조 제3항 단서의 방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와 ii) 허락한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7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위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적어도 해당 실연자로부터 최초로 허락을 받아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에 대해서는 제7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케이블 PP측은 법무법인 회사에 자문한 결과 기존의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애니메이션 채널 이외에 PP사업자, 혹은 SO사업자가 방송실연자협회에 저작권접권료를 지급해야 할 법률적 근거 조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자문 의견을 사안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복제권, 저작권법 제69조), 방송할 권리(방송권, 동법 제73조), 전송할 권리(전송권, 동법 제74조) 등을 가진다. 다만 방송권과 관련하여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따로 실연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단지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만을 갖게 된다(동법 제73조 단서, 제75조). 한편,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동법 제100조 제3항).

위 규정에 의하면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특약을 할 경우에는 영상제작자가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함에 있어 실연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인바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므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 목적 범위 밖에서 이용되는 경우(예를 들어, 영화 OST)에는 실연자가 위 저작권접권을 보유하므로 OST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실연자로부터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참조).

한편 귀 협회는 실연자협회가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를 주셨는바, 지상파채널 및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콘텐츠는 대부분 영상저작물일 것인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방송 또는 디지털 음

성송신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상의 지정신탁단체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방송실연자들로 구성된 실연자연합회와 같은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법상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접권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공중송신이라 하고, 이러한 공중 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 방송되며, 이러한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방송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8, 9호). 여기서 방송사업자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를,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심지어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 반면에 방송법에서는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 수신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유형 중 데이터방송의 범위에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사업자로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법 제2조 제1, 3호) 방송프로그램이 폐쇄형 형태로 전달되는 IPTV는 물론 개방형 형태로 전달되는 인터넷방송의 경우 방송의 정의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다만,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을 통해 IP방식 방송서비스도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실연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PP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에 참여한 다음, 방송사업자들이 그 방송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재방송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의 복제권, 방송권이 적용될 것이고, 그 방송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복제권 및 전송권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특약이 없는 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영상저작물제작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PP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고(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

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 위 사업자들이 그 콘텐츠를 재양도하더라도 실연자가 한번 양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콘텐츠를 전득한 자가 영상저작물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 방송콘텐츠에 담긴 실연을 복제하여 방송 또는 재방송,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접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조항들을 근거로 각 사업자가 실연자협회에 저작권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접권료 지급구조와 SO사업자와 PP사업자 간의 방송구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²⁾.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접권료 지급 구조

저작권법이 법률 제6881호로 2003.5.27. 개정되기 전까지 영상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법률 제7233호 2004. 10. 16. 신설)의 양도규정이 간주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실연자들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저작권법의 위 규정이 추정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실연자연합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저작권접권료의 지급에 관하여 특약을 체결하고자 협상을 벌였고, 결국 최근 협상이 타결되어 재방송 등에 관하여 저작권접권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직접 재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계열의 PP사업자를 통해 재방송하는 것에 관해서는 위 계열의 프로덕션 등을 통해(지상파계열 케이블채널방송사업자의 콘텐츠관리 책임은 내부적으로 프로덕션 등이 부담하므로) 저작권접권료를 지급해 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지상파콘텐츠에 관해서는 특약이 존재하고 있어, 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셈이 되므로, 실연자들이 첫 출연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허용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실연자연합회에게 저작권접권료를 지급해주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2) 법무법인 회사 'Y'와 PP저작권 TF팀 간의 업무 협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② SO사업자와 PP사업자 간의 방송구조에 따른 의견

먼저 PP사업자와 SO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방송사업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PP사업자는 크게 가)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받아 재사용하는 경우와 나)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PP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콘텐츠를 공급받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계열사들이 재방송에 대한 저작권접권료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케이블채널에서의 재방송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해 준 것으로 간주하여 실연자연협회가 따로 PP사업자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편, PP사업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진행되지만, 실연자협회와 PP사업자간에 이 부분에 관하여 협의가 타결되지 않았고, 일부 애니메이션 채널에 관해서만 특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하므로, 짐작컨대, 성우 실연자들에 관해서만 특약이 체결되는 것인 듯하다. 즉, 애니메이션 채널을 제외한 PP사업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의해 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이 영상제작자인 PP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작권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바, 만약 특약이 체결된다면 그 특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예상컨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PP사업자가 실연자와 출연계약에 의해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재방송하는 경우에 저작권접권료를 지급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SO는 사업의 특성상 자체채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방송내용이 PP와 지상파콘텐츠의 실시간 전달로 구성된다고 한다. 물론 SO사업자가 방송법과 저작권법에서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만, PP사업자와 별도로 방송콘텐츠를 방송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고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이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PP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SO사업자가 송출하는 경우 PP

사업자가 그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SO사업자가 방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혹은 양 사업자 모두 방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법문 상으로는 양 사업자 모두 방송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럴 경우 실연자에 대한 이중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사업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연자협회의 저작권접권료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 SO협회는 실연자협회를 상대로, PP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지상파콘텐츠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의 계열 프로덕션으로부터 저작권접권료를 지급받는 점을 근거로(실제로는 지상파방송사의 계열PP사업자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본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P사업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 실연자협회에게 위 콘텐츠에 관한 방송 또는 재방송에 관한 저작권접권료는 PP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SO사업자는 단순히 방송을 송출할 뿐이므로 SO사업자에게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ii)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연자협회는 위와 같은 SO협회의 답변(주장)에 관하여, SO협회가 저작권접권료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주고 있다고 하므로(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SO사업자가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가협회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실연자협회를 별도로 대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실연자협회는 i) PP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미 PP사업자들과, 추가적으로 PP사업자들로부터 저작권접권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ii) PP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에 관하여는 애니메이션채널들에 대해서만 저작권접권료를 청구하기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PP사업자들과 위와 같은 안에 따라 협의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PP사업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에 관하여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PP사업자 또는 SO 사업자 간에 누가 실연자의 저작권접권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실연자협회로서는 PP사업자들과 저작권접권료에 대해서 위 안대로 협의가 완성될 경우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접권료에 대해서는

SO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SO협회의 SO사업자들을 상대로 이중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O협회는 실연자협회를 상대로 PP사업자와 SO사업들로부터 (이중으로) 저작인접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특별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그 근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쳐 최종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o 사례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vs IPTV

IPTV의 상용화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방송인지 전송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이 저작권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IPTV와 신탁권리단체 간의 저작권 분쟁이 표면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IPTV는 다른 방송사업자와 전송 사업자의 중간 정도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음저협과 합의서만 제출한 상태이다.

매출액단위로 지불하기로 했는데, 5단계로 나누고 있다. 2009년에는 0.4749 (광고는 20% 제외) 이다. 그리고 미디어랩도 이슈이다. 지상파는 8%인데, 민간사업자인 우리에게는 40%나 가져간다. 사실 저작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말이다.(미디어 랩에서 가지고가고 매출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IPTV, H)

3)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사례

o 예상 사례1: 신탁권리단체 vs IPTV

2008년 10월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IPTV는 융합콘텐츠 저작권 관련 주체 중 핵심 사업자이다. IPTV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방송이나 전송이나 혹은 디지털음성송신이나를 두고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 더구나 멜론과 같은 음악서비스가 IPTV를 통해 제공될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저협에서는) IPTV에 관련한 저작권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사업자에 관련된 요율을 달라고 해서 합당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음저협과는) 아직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다. 음저협이 해결된 이후 순차적으로 음저협이나 실연자 협회와 이야기할 것이다(IPTV, H).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합의서를 쓰면서 작년에 추정금액으로 2억 원을 내기도 하였다. 정확한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합의서만 쓰고 있다. 올해 10월에 멜론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쇼핑 쪽에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영상과 T-Commerce를 연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IPTV, H).

IPTV의 경우 저작권법의 정의에 있어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중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권리처리 방식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음실연).

o 예상 사례 2: 신탁권리단체 vs 온라인 매체의 '전송' 이나 '복제'

융합콘텐츠와 관련되어 가장 문제점으로 삼은 것은 '전송'과 '복제'의 문제이다.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향후 직·간접적인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저협에서는 공공채널인 국회방송의 경우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데, 온라인이나 다시보기까지 확대될 경우 저작권료 면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역시 '전송이나 복사'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일정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용료 기준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 사용료 징수기준을 사용량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PP,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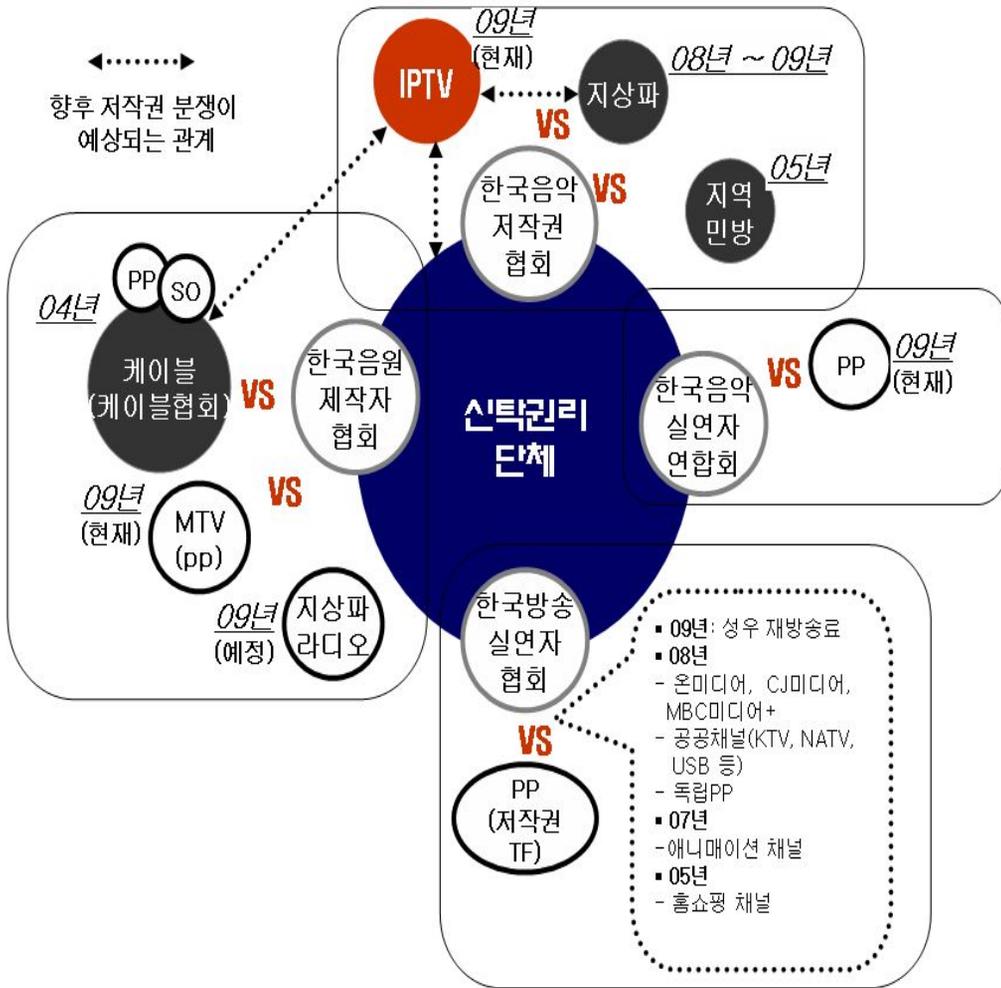
국회방송의 경우 정부방송인데, 저작권법제29조를 들어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

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온라인에서 온에어로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 심지어 디지털음성송신까지 하는데, 이것까지 면제를 주장하면 향후 문제가 될 것 같다. 아직은 우리 쪽에서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으나 주시하고 있다(음저협).

4) 분쟁의 지형도

지금까지 살펴본 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사례를 저작권 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4] 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 지형도



3. 유료방송 시장의 저작권 분쟁 원인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의 핵심 원인은 과거 낮은 수준에 있었던 저작권료를 해외 수준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신탁관리단체의 인상 요구와 요율에 대한 양측의 입장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구조의 문제, 매출액 베이스의 지급 구조 문

제,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 문제, 이용 내역 자료의 비공유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1) 해외 수준의 저작권 인상 요구

방송사업자들은 신탁관리단체가 지나치게 요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단체들은 해외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단계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 방송사업자들의 입장

<인터뷰 내용>

결국은 돈의 문제이다. 신탁관리단체들이 국내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외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상파Y)

국내 저작권시장의 규모나 인식이 해외와 사정이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우 해외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최근 플랫폼의 다양화로 추가 수익이 방송사에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사 콘텐츠의 불법유통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방송사가 대응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이 우리보다 40배 정도 높다. 우리는 매출액 대비 0.2%가 음악저작권료인데 비해 외국은 매출액의 4% 정도이다. 최근 방통 융합으로 추가 수입분에 대한 분배 요구도 있다. 일례로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매출액기반과 그렇지 않은 조직 (예, 방송실연자협회는 출연료베이스)이 있는데, 매출액 기반으로 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한 추가 수익분을 요구하고 있다. IPTV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온미디어 밖에 없으므로 150억 (연간)의 일정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PTV에 콘텐츠 공급하면서 받는 액수의 일정%를 요구하는 것이다. 가령 지상파에는 1300억의 일정%를 요구하고 있다. 실연자협회는 출연거부를 통해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그

렇게 관철될 가능성도 있다. 매출액기반인 경우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케이블 PP 1)

그 나라의 소득과 같은 경제수준, 음악을 이용하는 음악시장규모, 유료시장의 사이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지 외국이 그랬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는 매출액의 1%가 안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3%까지 가야 한다고 음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케이블PP 2)

(2) 신탁관리단체의 입장

<인터뷰 내용>

음저협 입장에서는 방송은 포괄계약 (음저협에 신탁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에 허락을 받는 대신 자유롭게 사용하고, 대신 분기별로 사용료를 내는 시스템)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용량도 많고, 현재 협회가 관리하는 것이 97%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방송사측 입장에서는 실제 방송한 곡 중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곡만 저작권 대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

관행적으로 저작권법상 제작자와 실연자의 보상을 1:1로 보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외국은 아예 법으로 되어 있어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매출액대비 2%, 저작인접권자는 1%, 제작자 1%이나, 국가별로 다르다. 국내 현실은 0.03%가 KOMCA, 그 절반(0.06%)이 음실연이다. 곡당 500원정도 인데, 방송 1회 출연료가 15만 원 정도 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실연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외국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신료를 외국 수준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보상금이 매우 낮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자 대비 실연자가 1:1(50%)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저작권 사용료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우리가 힘들다. 상생의 관

계로 가서 이해해야하는데, (사업자들은) 금액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하향으로만 갈려고 한다.

케이블과는 2002년에 계약을 했다. 당시 초기에는 지상파보다 낮춰서 계약했는데, 이제는 매출액이 많이 늘었고, 가입자 수가 지상파수준으로 정상화되었고, 저작권법을 통해 징수범위가 확대되었다. 상호주의(그 나라에도 동일한 법이 있다면 우리도 보호를 해주는 것) 계약으로 국내실연에서 외국실연도 포함하게 되었다. 사실 지금 요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면 방송시장 개방 시 직배사가 방송사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킬 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추후 상호주의 체결 시 쓰기 위해 세이브하고 있는데, 지금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케이블 수용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현재 일본과는 상호주의 계약이 진행 중이다. KOMCA는 작년에 일본과 상호주의를 체결하였고, 조만간 우리도 체결될 듯하다. 또한 음저협은 국내에 있는 외국 배급사의 요구로 분배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실연)

지금은 방송사가 너무 자기 위주로만 과단하고 외국사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거에 음악권리단체에게 너무 낮은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절반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홍콩(매출액의 4.5%, 저희는 0.18%)이나 일본과 상호주의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워낙 낮다보니 국내와 상호주의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내 시장과 외국시장의 다른 점은 국내는 광고단체가 있어 광고단가가 정해져 있어 올릴 수 없다. 방송사는 광고단가가 너무 낮다고 보는데 이니 국내사의 사정일 뿐이지 이것이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60%까지 인상하면 매출액 대비 0.5%정도이고 방송사마다 약간의 차이니 있다. 갑자기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상태이다.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면 홍콩이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음악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이익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제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한다. 저희가 계획하기는 3년이나 5년 뒤에는 되어야하지 않을까한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방송요건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현재는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다. 음저협이 지상파3사와 외국수준의 70%까지 하자고 합의 보았다. 우리는 2012년까지 외국의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급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으

나(음저협은 요구하고 있음), 그렇게 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방송사측에서는 무조건 우리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만 하는데 막상 국내음반제작자가 외국음반제작자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을 받아야하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렇지도 못한다.(음저협)

케이블은 너무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더 없다.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갈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04년부터 보상료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적자가 이만저만 아니다. 지상파 협상은 우리가 진행하고 케이블은 음실연을 따라 가려고 한다. KOMCA 대비 8.9%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송사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분담을 하기도 하는데 케이블은 그런 것이 없다.(음저협)

2)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구조의 문제

방송사업자들은 현재의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구조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용자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비공개적 결정 구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인터뷰 내용>

문화부 승인만 있으면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문제가 있다. 매년 전년도 대비 저작권료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2004년에는 400% 이상 상승하였다. 해결방안은 정부가 균형 있는 안을 제시하여 전년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발전기금처럼 ‘음악발전기금’을 제정(예, 프랑스) 해야 한다. (지상파Y)

저작권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료의 가격책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권리자나 이용자가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가격 결정의 과정이 그리 공개적이지 않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하는 느낌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가격결정의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그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저작권 시장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신탁회사가 가격 상정하면 문화부가 이를 승인하는데 거기에는 이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가격결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권리보호에 치우쳐 있다.(케이블PP 1)

3) 매출액 베이스의 지급 구조 문제

현재 매출액 베이스로 저작권료 및 음악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들은 매출액 베이스가 적정 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이며, 곡당 사용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터뷰 내용>

매출 베이스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콘텐츠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 일정한 기준도 없고, 방송채널은 높고 홈쇼핑은 낮다. 정부가 적정단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한다.(지상파Y)

사용료 징수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현재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이 올라가면 사용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일본의 방송사의 매출은 음악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일견 논리적으로 보이기 는 하나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다. 매출액은 올라가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음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채널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음악사용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케이블PP 2)

우리 입장에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채널특성에 따라 다르게 (매출액의) 0.1%에서 0.03%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업자 쪽에서는) 실질적인 음악 사용량을 체크해서 곡당 사용료를 책정하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곡당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는 곡당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매출액 베이스로 가고 있다. 매출액 베이스의 근거는 ‘교양, 오락, 음악, 홈쇼핑 채널 중 음악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고려한다. 홈쇼핑의 경우 대부분 음악을 틀고, 더구나 판매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다. 이때 상품매출부분은 공제하고 받는다. 나머지 부분은 채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음실연)

4)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 문제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가 권리 남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탁단체 입장에서는 복수단체 체제로 갔을 경우 장단점이 있으며 오히려 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만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케이블TV방송협회 내에서는 ‘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가칭)’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케이블PP 1)

음악 관련해서 KOMCA라는 단체가 현재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입장인데, 이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저작권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에서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음저협의 복수단체라든지, 온라인 시장 환경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PP 2)

현재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관리가 부분별로 신탁관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종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방송환경에서 사진 따로 영상 따로 음악, 어문 등 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해당 권리자(신탁자)와 인접권자 까지

일일이 협상을 하고 이용허락을 맡아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비효율이다.(현재 방송제작자는 이미 범법자 수준) 따라서 저작권의 집중 관리 제도를 도입(복수 포함)해야 산업의 발전은 물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보호(배분)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케이블SO)

거대한 단체가 우호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수체제인 경우 KOMCA와 모두컴 두 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음실연)

복수관리단체는 정부가 정할 문제이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복수단체 운영 시 관리수수료(20%는 협회 운영수수료로 댄다. 1.5배 정도 든다)가 드는데, 복수단체로 운영하면 KOMCA가 80원 떼던 것을 나눠서 떼다보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실운영, 비품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 이런 비용이 권리자들, 즉 회원들에게 나갈 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올챙이(올바른 음악...), SM과 같은 대형기획사’ 등이 일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KOMCA회원들이 더 널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장점은 서비스 경쟁을 하게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작권사용료(관리수수료와는 다른 것)가 낮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 경쟁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방송사 입장에서 두 개로 나누려는 이유는 KOMCA가 방송사(지상파3사: 방송협회 대표로)와 협상 중 너무 거칠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PD가 출두하는 등 음저협은 형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방송사도 외국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인식을 해야 한다.(음저협)

5)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규정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 이용자인 방송사업자들이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자료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양측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신탁관리단체가 알아서 모니터링하고 이용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탁관리단체들은 사업자들이 이용자료를 신탁관리단체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IPTV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상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 3-5] 저작권법 제 107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터뷰 내용>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규정에 의하면 권리자의 경우 사용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서 규정의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제107조 위반의 경우에 과태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괄적 사용허락을 해주는데 분배 자료가 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음악 큐시트가 와야지 우리가 분배를 파악하는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걸로 끝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음악을 사용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보고 비협조적이다. 일례로 최근 프로야구 쪽에서 분배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자료를 이용자에게 못 받기 때문에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분을 신설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음저협)

시행령 2조를 보면 의무규정이 있는데 사업자들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 보상금 수령단체 관련해서 저작권법 제25조를 준용하고 있다. 보상금의 4%를 모니터비용으로 받고 있는 셈이고, 아울러 별도로 모니터링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모니터를 확보하고 있다.(음실연)

IPTV는 시청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분배는 확실하다. 공공 기관에서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준다. 하지만 음저협이나 음실연과 같은 민영기관에서 요청 할때는 정보취급의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 (IPTV)

4.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저작권법의 애매한 조항이나 미비 조항으로 인한 문제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법과의 개념 정의 불일치, 저작인접권의 권리 불균형 문제 등이 그것이다.

1) 방송법과 저작권법상의 개념의 차이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기존에 학자들도 주장하였듯이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정의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저작권법에서는 방송과 전송을 구별하면서 양자 간의 개념상 구분이 명확치 못한 영역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최진원·남형두, 2006). 특히 이는 실질적으로 방송과 전송의 요금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와 권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IPTV와 같은 융합매체의 경우 대표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 융합콘텐츠 저작권 문제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

[표 3-6] 방송과 전송 법 조항 비교

구분	관련법	법조항
방송	방송법	제2조 1항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	방송법	조항 없음
	저작권법	제2조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인터뷰 내용>

저작권법과 방송법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 ‘--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상호 매치가 안 된다.(예, 공중송신권)(지상파Y)

공중송신은 방송과 송신의 상위개념이며, 이 개념은 일본법에서 도입한 것인데, 실제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개념이다.(케이블TV PP 1).

2) 영상물특례조항 제100조의 해석 모호성

현행 저작권법 특례조항 제100조에 대해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들은 이 조항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애매성을 가졌다고 보는 반면, IPTV사업자와 일부 신탁관리단체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표 3-7] 저작권법 특례조항 제100조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인터뷰 내용>

영상저작물특례조항에 의해 영화제작시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을 ‘양도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재방이후 수출까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지상파Y)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경우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유통한다는 조항인데, 실제로는 각 플랫폼별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때 플랫폼마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케이블PP 1)

영상저작물의 특례조항은 해석상 어려운 점이 많은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영상제작자가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계약서 미체결 또는 적은 사용료의 지급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 명확한 계약서 체결이 필요하며,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음저협)

판매용음반 징수 요건 및 영상저작물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에 있어 양측의 상이한 주장이 있다.(음실연)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상제작자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 조항은 영화나 영상제작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법조항의 취지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0억을 들여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수출시 실연자가 본인의 권리 없이 수출 못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들도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제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 어쨌든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박이 난 경우는 얼마 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손실 날 경우에 실연자가 배워 주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음실연과는 다른 입장임)(음제협)

2003년 개정 이전에는 간주규정이었기 때문에 특약가능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자치가 가능해져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동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는 저작권재산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해석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학계)

3) 저작인접권 주체간의 권리 불균형 문제

저작인접권 3주체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중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제84조와 제85조는 타 인접권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가 제한적인데 이에 대해 방송사업자들과 일부 신탁관리단체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IPTV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표 3-8]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를 가진다.

<인터뷰 내용>

방송사업자(저작인접권자)의 경우에는 다른 저작인접권자가 가지고 있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기타 보상청구권에 비해서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만을 행사하고 있음. 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방송사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송출하기 위해서 기울인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송권이 추가로 신설되어야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다운로드 등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케이블PP 1)

방송사업자의 경우 저작인접권자로서 자신의 영상물에 대한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음저협)

위 권리들은 종래 전통적인 개념의 방송사업자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형태의 방송이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방송사업자에게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을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학계)

제84조는 해외사례나 외국의 동향을 봐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하면 타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방송사업자는)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다. ‘영업장 조항’에 대해 보상금을 받도록 노력해서 얻어냈다. 방송사는 여론이 무서워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권리자가 나서지 않은데 누가 챙겨주겠는가? 해외 같은 경우도 영업장에서 음악이 방송되면 방송사업자는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로마협약, 베른협약, 실연방송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 국제협약을 참고하면 보다 방송사업자 관련 저작권 조항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음저협)

4)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문제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항들이라고 주장하였다.

[표 3-9]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p>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 여객 운송 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인터뷰 내용>

시행령 11조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내라는 이야기로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락한 경우이다. 하지만 우리측 주장은 이와는 반대로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원칙적 허락을 하고, 다 사용료를 받고 못 받는 곳만 예외조항으로 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음저협)

시행령 11조 8항을 보면 현행 판매용 영상제작물의 공연에는 음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매용 영상 및 음반 저작물의 공연'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4항의 경우에도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해 예외로 두고 있는데, 열차라면 열차내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공연이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역이나 대합실, 승차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제한하고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제3항 전문체육시설 역시 굉장히 제한적이다. 조항에서는 선수경기종목들이 한정해서만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체육시설에서 사실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민 한마당'이나 이런 경우 사용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 (음저협)

5)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7조) 규정의 문제

일시적 복제나 보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탁관리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표 3-10] 저작권법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인터뷰 내용>

방송사업자는 녹음/녹화할 수 있고 1년 동안 보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방송을 목적으로 보존하느냐, 그리고 1년만 보관하느냐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이다. 방송사에서는 현재 아카이브를 만들어 대량으로 복제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입증이 힘들니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법제화해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아카이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방송 보상료에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방송 보상금의 80%를 복제 보상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IPTV가 나오는 시점이라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음실연)

6)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조항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에 대해서 신탁단체들은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표 3-11]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인터뷰 내용>

OSP책임조항(제102조)은 포털을 염두에 둔 것인데 포털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올려서 침해가 일어나면 침해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 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포털은) 이것이 정말 당신의 저작물인지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침해는 이미 일어나고, 그러나 이미 침해가 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음제협)

5. 융합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IPTV와 같은 융합매체의 경우 아직까지 분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IPTV의 성격 규정 문제

대표적인 것이 현행 저작권법상 IPTV는 방송인지 전송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다. 저작권료는 전송이 방송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IPTV의 성격이 저작권법상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뷰 내용>

저작권법상의 방송, 전송이 있는데 IPTV는 동시성과 이시성이 동시에 있으므로 따로 분배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전송이 방송저작권료의 2배이며, 권리자들은 방송과 전송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저작신탁관리단체의 권리허락은 방송사의 경우 방송권에 대해서만 허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사업장에서는 어느 곳으로 정하든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융합시대에는 저작권법상의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공중송신권으로 권리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서비스 자체가 저작권침해로 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추가 저작권료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제작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다.(케이블PP 1)

IPTV방송에는 1)실시간 방송 2)다시보기 3)인터랙티브 세 가지가 있다. 방송이나 전송이나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방송으로 국내에서는 됐는데, 서비스형태가 일방향인 경우는 방송이고, 쌍방향인 경우는 전송이라고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송인 경우 효율이 두 배 정도 높은 데, 현재는 중간 정도로 합의를 한 상태이다. 이러한 합의안이 문화부에 승인 신청이 들어 간 상태이며, 별 문제가 없으면 문화부에서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효율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방송시장과 전송시장이 단절되어 형성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송통신융합 시장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음저협)

IPTV를 공중 송신 중 과연 어느 카테고리(방송/(온디맨드니까)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中)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권리처리 방식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송은 배타적권리로 신탁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보상청구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송은 음실연이 신탁을 받은 부분만 행사하게 되어 있다.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정부에서 정한 업체가 권리를 대신한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처리가 비효율적이다 보니 보상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IPTV의 경우, 신탁권리로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국내 음악의 70·80%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30%정도에 대해 위험부담이 생긴다. 즉 신탁하지 않은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접권은 권리처리방식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 현재 KOMCA는 모든 권리처리를 신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음실연은 개별 권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상금액 협상도 문제이다. KOMCA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하면 되지만(처음은 힘들지만 이후에는 그에 따르면 되니까 편하다), 우리는 몇 년 협상을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어 애로가 있다. 보상금도 협상이 아니라 요율로 가면 더 편할 것 같다. 그러나 외국도 협상으로 가고 있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도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IPTV가)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IPTV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음실연에서는 외부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할지 의뢰해놓은 상태이다. 만일 임의로 우리가 (방송인지 아닌지) 정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IPTV는 기존 케이블 방송시장의 나눠먹기가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유비쿼터스, 음악다운로드, 대형 통신판매시장과 융합 등)로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음실연)

디지털음성송신 정의에는 영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IPTV는 디지털 음성송신에서 빼고 있다. 하지만 영상을 빼면 방송사가 VOD, AOD, 실시간 등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이나 전송이나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영상제외항목을 빼면 많은 이용형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음실연)

방송사업자는 수익성 때문에 전송으로 오고 싶어 하고, 전송사업자는 홍보성 때문에 방송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IPTV이다. 예를 들어 전송에 있는 멜론이 IPTV로 들어오면 과연 정체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있다. 멜론과 그 내에 있는 MLB(Music Licence Bank)는 현재 전송으로 되어 있는데, IPTV로 들어와 방송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IPTV)

합의서를 쓰면서 작년에 추정금액으로 2억 원을 내기도 하였다. 정확한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합의서만 쓰고 있다. 올해 10월에 멜론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쇼핑 쪽에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영상과 T-Commerce를 연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IPTV)

IPTV가 현재 저작권법에서 방송인지 전송인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인데, 검토 후 방송에 해당된다면 보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청구할 것인데, 이는 개별 음반사가 청구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본래 저작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데, 방송은 특수한 경우이다. 음악저작권자는 창작자이자 저작권자이다(작사/작곡자 등), 전송 보상료의 경우 회원들이 개별 요구를 할 수 있다.(음제협)

방송과 통신의 중간에 놓이는 게 맞다고 본다. 디지털음성송신처럼 또 하나의 조항을 만들던지 한쪽에 편입해야 할 듯하다. 보상금처럼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개별 방송사가 라이선스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고 권리자가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IPTV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요율부분에서는 웹캐스팅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본다. 전송도 매출액 베이스이다. 전송은 매출액의 45%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TV가 아니라 벽스나 소리바다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 음제협 같은 경우는 25%-28%를 받고 있다. 방송과 비교하면 열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는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다, IPTV는 사실 이런 공공성이 낮기 때문에 훨씬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법이 해석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다.(음제협)

저작권법 2조 ‘디지털음성송신’의 용어가 잘못된 것 같다. 디지털 방송의 경우 영상송신이 많고, 특히 IPTV는 그러하다. 그럼 IPTV는 디지털음성송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디지털음성영상송신’으로 바뀌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방송사도 같은 의견이다.(음저협)

2) 재가공 저작권의 문제

여기서 재가공이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UCC에서 활용하는 음성이나 영상의 일부 이용이 있고, 둘째, 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하는 하이라이트 구성이 있으며, 셋째, 기존 콘텐츠에 입히는 T-Commerce 등 데이터 양방향 방송이 있다. 저작권 분쟁은 대개 첫째와 세 번째 형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폭도 큰 상황이다. 특히 세 번째의 콘텐츠의 재가공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이전에 각 플랫폼의 현재 및 미래 위상과 직결되는 이슈로서 현재 콘텐츠의 주생산자인 지상파나 케이블PP와 IPTV의 입장 간에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자신들의 재가공 역시 재가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나 IPTV의 경우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내용>

현재 UCC의 경우 콘텐츠를 이용자가 자유로이 가공을 하고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가 시급하다. UCC가 현재 유통되는 것에 대해 징수 규정이 없다. 포털업체와 협의 중이기는 하는데, 빨리 사용료 규정이 협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방송사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TV팟이나 꿈TV를 통해 유통이 되니까. 방송물 판권을 주장해야하는데...그래도 지상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에게 사후 이용 보상금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받아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저협)

관련 저작권법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그러한 재가공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 시장경제 논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UCC를 이용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여건을 제공한 대형 포털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결국 B to B로 해결해야 한다).(음실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영상 커머스 시장이다. 제작자가 콘텐츠를 판매하게 되면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원천제작자가 요구하게 된다. 이 때 콘텐츠를 가져온 사람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른 계기(부가수익)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재가공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방송콘텐츠를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큰 부가시장이 있다. 기능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IPTV가 다른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 커머스 시장은 지상파 DMB의 광고시장과는 관계없다. 사실 지상파 DMB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뒤쳐져 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메뉴얼을 구현하고 있다. 터치(손으로 넘어가는 경우)같은. 전자제품이 발전하면서 IPTV도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KT&G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TV가 바보상자가 아니라 정보 상자이다.(IPTV)

케이블 콘텐츠의 경우 비용을 너무 달라고 해서 고민이다. 연간 수신료 자체를 100억 단위 넘게 요구하고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 (100억원을 부르는)논리는 따로 없고 단지 부르는 게 100억이다. 사실 온미디어의 경우는 알짜배기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 이미 KT&G와 LG는 계약을 했다. 저희는 아직 CJ나 온미디어와 계약하지 않았다. 단, CJ내 엠넷미디어와는 계약이 진행 중이다. (만일 국내에서 영상 커머스 부분이 저작권 부분에서 해결이 안되면) 미드나 영화와 같이 해외 콘텐츠로 먼저 갈 수도 있다.(IPTV)

제작은 제작시스템이라는 전문인이 모여서 제작을 하는데, 그 위에 기능적이고,

상품적인 부분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해외 시장에 가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데, 콘텐츠를 글로벌화하려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작은 방송사에서 담당하고(전문화되어 있으니), IPTV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을 전담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글로벌 시장에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전문성 부분은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고(노하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작은 잘 모르니 펀드형태로만 참여하고 있다. iHQ 인수는 직접 제작하려다가 실제로 실패한 사례이다. 현재로서는 지상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결국 지상파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함께 했을 때 글로벌화 될 수 있을 것이다.(IPTV)

충분히 오픈되어 있어 누구든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영역을 만들 수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다. 현재 외주 제작사들과는 우리가 찾아가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인터랙티브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이었다(공모결과 20개 업체). 많은 사업자들이 기능적인 부분을 어플리케이션 해주면 보다 좋은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PTV)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부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제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가 저작권자 혹은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면에서 저작권유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저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저작권의 범위 내지 이용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쉽고 빠르고 대규모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 확보 내지 침해 여부에 대한 쟁점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작권이용에 관한 상세한 표준계약서 또는 이용허락계약서 등을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저작권을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학계)

3)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용이성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터뷰 내용>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사업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워터마크 또는 특징점 필터링을 통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필터링 표준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디지털콘텐츠를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자와 B to B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유저들은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DRM-Free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복사기 나올 때 복사기 제조업체로부터 저작료를 받았다. 이용자들이 저작권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에서 미리 해결하고 가는 것이다. NHN, 다음이 음악저작권협회와 소송 중인데, 블로그 음악스트리밍서비스와 관련하여 포털의 책임을 물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것을 B2B로 간다면 NHN이 일정료를 저작권료로 징수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털에서는 광고료나 이용료 유료화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액수가 문제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다음에 30억을 요구하고 있으며, NHN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과거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액수인데 액수가 너무 크다. (케이블PP 1)

DRM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DRM이 애초에 장착되어 나오면 용이한데, 원래 없던 것에 탑재를 하다 보니 그것을 우회하기도 쉽다. 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다. 사실 DRM은 이용자 편익을 규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DRM은 너무 쉽게 풀린다. 좀 나아진 기술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번번이 뚫리는 경우가 많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기술적 보호 장치가 없다. 예를 들어 멜론을 다운받을 때 사운드카드에서 바

로 뽑아 고음질을 이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유통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OSP가 경감 면제를 받기 위해 이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유출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답을 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음제협)

6. 융합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 및 개선 방안

현재 저작권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정부기관은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인데 방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개입이나 방관자적 입장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방송사업자들은 정부가 저작권 이용을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협상에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신탁관리단체는 대체적으로 현행 체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

사용료 승인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균형안을 제시하여 전년 대비 일정%를 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발전기금처럼 ‘음악발전기금’을 제정(예, 프랑스) 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료에 대해 정부가 적정단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지상파Y)

저작권은 문화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분쟁의 출발점이 가격이므로 정부 중재가 필요하다. 현재는 저작권료에 대해 정부가 관심이 없다. 당사자 간 계약이라

는 입장이며, 그래서 계속 분쟁을 낳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가격결정 단계를 사업자단에만 미루어 두지 말고, 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한 금액에서 저작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법의 추세는 당사자 간의 개입으로 가고 있으나 국내 시장을 보았을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입이 필요하다. 신규플랫폼이 출현해도 과중한 저작권료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접게 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단체들이 지나치게 가격 높이지 않도록 물가연동제 등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재적 성격인 저작권이므로 권리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송사업자는 다른 저작인접권자에 비해 열위의 권리 가지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저작권 업무를 가지고 가야 한다. 문화부와 방통위가 협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방송법에 만들어야 한다. 주무관청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 있는데, 저작권은 문광부가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방통위 관리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케이블PP 1)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 문광부가 해결 못하고 조정역할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방통위 개입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를 가지고 개입하면 좋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개입할 때는 방송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배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올렸는데,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들이 복제 공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홍보가 우선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청률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다. 이용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는 사실상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맞으나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개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방송사업자의 이해나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해서 기준제시를 해줄 수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면 개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케이블TV PP2)

작년 우리 협회와 방송3사 간 음악저작물 사용계약 체결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문화부에서 조정안을 결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문화부에서 권리와 이용자

간 계약체결에 많은 중재를 하여, 원만하게 처리된 경우가 있었다. 방통위와 문화부의 갈등관계가 있는데, 사실 저작권법 자체는 문화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개인적인 생각은 방통위는 심의나 사업자 관리가 주 업무이고, 저작권법 자체는 행정기관 문화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외국도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문화부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방통위가 관리하게 되면 현재 한국방송협회에서 의견개진하고 있고, 저작권 위원회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어보고...결국 요율 조정은 저작권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와 권리자의 의견을 모두 들어 조정하고 문화부장관에 승인받는 형태이다. 지금으로써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통위 개입은) 힘들듯하다.(음저협)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도 사전에 이용자의견 수렴을 통해 저작권 위원회나 문광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너무 높은, 불합리한 요율을 요구하면 문화부에 중재를 요구하나(저작권위원회 → 문화부 → 법원), 판사들도 대부분 합의를 요구한다. (음실연)

국내방송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케이블시장이 크면 지상파가 줄고 IPTV가 커지면 다른 곳의 매출이 줄어든다. 미국은 지상파, 위성 따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내시장의 경우 지역이 너무 작아서 수익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수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인가만 내주고 관리규제만 하려고 해서 안 된다고 본다. 보상금 협상이 잘 안되는 이유가 방송사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제협)

방송시장을 살려야할 것이다. (방통위가 또 하나의 관련 주체로 끼어든다면?) 별 효과 없고 오히려 부서 간의 분쟁만 더 늘 것이다. 부서 간의 이견이 있어서. 현재상태만으로 방송사의 덩치가 크고 잘 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아도 방송사가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우리가 조정이나 소송이 들어갈 때 사전에 문화부에 보고하는 형태이다. 문화부는 보고만 받는다. 당사자 간에 껍이 좁혀지지 않으면 문화부가 중재를 해주기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사실 결과 제시는 사법부의 역할인데, 행정부에서 뭐라 하지는 않을 듯하다.(음제협)

방송 산업 영역에서의 분쟁에 대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창작자가 아닌 한 분쟁의 제기나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평화로운 분쟁해결절차에 의하기보다는 결국 소송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 따라서 창작자 또는 제작자의 이익과 방송사업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위하여 양당사자가 쉽게 접근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학계)

2) 저작권법의 개정

방송저작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은 상호 의견의 차이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저작권법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뷰 내용>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기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대비하여, 정부기관에서 법 및 제도를 보완하여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뉴미디어 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음저협)

방송사는 저작권자이면서 저작인접권자이고, 또한 저작권 이용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율 이상의 인상을 제한하는 저작권법상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케이블PP 1)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일정정도 공공재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다. 더구나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신탁관리 단체들의 전횡이 저작권자는 물론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며 문화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어 저작권 관련 법령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케이블 SO)

입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관련된 법에 대한 입법이 우선이다. 미디어와 디바이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저작권법은 사후

약방 조치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데, 실상 저작권 침해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대량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유형의 OSP 및 대형포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실연)

IPTV가 적용할 수 있는 컨버전스 법으로 투명한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에 대해 KOMCA와 계약해야하는데 계약 틀 자체가 없어서 신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틀을 바꿔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틀을 바꾸기 보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융합된 부분에 대한 저작권 법에 있어야 한다(즉, 새롭게 만들어야한다). 우리는 이것을 ‘컨버전스 요율’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 부르고 있다.(IPTV)

저작권을 허락 기타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정이용’과 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학계)

3)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신설

방송사업자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개념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터뷰 내용>

각 저작권마다 관리되는 정보가 다를 경우에 활발한 유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이 마련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융합콘텐츠가 유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권리관리정보란 공동저작물 등을 언제 누가 작성했는가, 권한의 범위 등을 표시하는 것인데 현재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어문, 음악, 영화, 영상콘텐츠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작업 진행 중인데 어문콘텐츠는 권리정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

리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 국가가 나서서 모든 저작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유저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아쓰고 사용한 것은 카운트 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저작자들도 왕성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사용자 또한 떳떳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케이블SO)

IPTV는 시청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분배는 확실하다. 공기관에서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준다. 하지만 음저협이나 음실연과 같은 민영기관에서 요청 할 때는 정보취급의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 디지털화되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해외 추세로 보면 사실 DRM부분은 없어져야한다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데이터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권리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민간업체에 어떻게 주겠는가?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전체 시장 중의 몇 %를 사용되고 있는지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콘텐츠만 되어 있는데, 음악이나 작가 부분도 만들고 있다. 인물DB, 음악, 영화 등 모든 DB가 올해 안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IPTV)

정보유출이기 때문에 신탁단체에 줄 수는 없다. 현재 TNS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만가구 정도)개략적인 데이터만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내부 자료로 모두 가지고 있다. 가입자 전체의 DB를 가지고 시청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가 인기고 아닌지 알 수 있어 즉각적인 프로모션이 가능하다. (IPTV)

융합콘텐츠의 생성 및 유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선결문제로서는 융합콘텐츠의 제작·유통을 위한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 범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 권리자를 위한 법제는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보호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학계)

4)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 있는 정책

이용자인 사업자와 권리자 대행기관인 신탁관리단체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것이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양측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측이 상생 마인드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상생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

케이블pp는 지상파와 달리 자리를 잡으려면(지상파는 이미 윈도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나), 기존의 수급관권 이외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는데, 이것을 보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상파는 자생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만 케이블은 아직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케이블PP 2)

방송통신 융합시대에는 정부는 저작의 활성화와 함께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여야 한다. 저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리보호촉진(이는 대부분 권리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침해된 것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나타남)과 함께 이용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이 적절히 저작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가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소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융합시대에는 누구나 권리자 및 이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저작권문화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이익을 함께 꾀하기 어렵다.(학계)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까다롭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한미FTA에서도 권리의 보호에 치중하였으며, 4월 22일 개정, 7월 22일 실행되는 삼진아웃제도 역시 권리자보호를 위한 것이다. 서로 상생모델가지고 가야 한다. 신탁관리단체와 상생모델 찾고 있다. 실연자 단체(연예인, 개그맨)와 협상할 때는 연예인들에게 케이블에 출연을 많이 해달라고 홍보한다. 현재 연예인들은 더 비싼 출연료를 준다 해도 케이블에 출연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저급하다는 것이다. 많은 연예인들이 케이블에 출연해줄기를 사업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더빙물들이 많음. 서로가 도와주면 상생할 수 있다. 계약서 조항에 그런 협력조항들이 있다. 광고홍보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와는 상생모델을 못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외국 시장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눈높이가 다른 것이 문제이다. (케이블PP 1)

음악이 가장 많이 쓰는 채널인 엠넷이 사실상 가장 수익성이 낮다. 권리가 이 이용자와의 공생관계를 유지해야지 권리만 주장해서는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어 KMTV라는 음악채널의 경우 음악채널만으로는 비전의 한계를 느껴 채널을 종합오락으로 변경시켰다. (케이블PP 2)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많이 신설되었으나,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의 경우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를 통하여 제한적 열거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연방송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예외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법과 비교해 볼 때, 외국의 경우 저작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권리의 권익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 당사자 간 협의 불성립 시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원만한 조정결정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음저협)

저작권분야는 해외사례보다 우리가 더 앞서있다. ‘공정이용’과 ‘저작권보호’의 두 가지 저작권법 목표에서 후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저작권자-이용자 구도밖에 없다. 문화부 마인드로 가 있다.(지상파Y)

입법을 통한 법문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라고 양측은 상호 상생의 관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음실연)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침해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범위도 순식간에 넓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 제정비의 일환으로써 저작 관련 권리의 강화 및 확대가 추진되어왔고, 최근 일련의 입법은 대부분 권리자 측을 위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종래보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그 균형이 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소위 ‘3진 아웃제’(실제로는 4진 아웃)의 도입으로 그러한 비판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경향은 부득이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저작권의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권리자의 이익도 신장시킬 수 있다는 면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학계)

7. 논의의 종합 및 문제점

이상에서는 방송저작물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과 관련 당사자들의 분쟁처리에 대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방송저작물의 생산·유통·판매에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게 되는 만큼 권리관계 역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일한 논점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견해 역시 다양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둘째, 법 적용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셋째, 당사자들이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나 관행의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쟁점에 당사자들의 주장과 논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분야 저작권 관련 주체들

방송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와 신탁관리 단체 간의 주요 분쟁은 사용료 및 보상금 지불을 두고 벌어지는 것으로, 요율의 수준에 대해 당사자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방송시장에서 방송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음악저작권 관련 분야이다. 개별 권리자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하는 국내 3대 신탁저작권 권리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FKMP),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KAPP)이다. 이 중 음저협(KOMCA)은 본 저작자의 신탁관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를 갖는 반면 음실연이나 음제협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 시에는 본래 저작권 이용자와 저작권 권리자 간의 개별 계약이 원칙이나, 방송사업자의 경우 협회가 이를 위임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P의 경우는 현재 저작권 TF팀을 구성하여,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관련 사업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3) 유료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 사례

최근 유료방송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주로 지상파 3사와 외주 제작사간, SO와 각 실연협회나 제작사협회간의 분쟁으로 요약할 있으며, 향후에는 신탁관리단체와 IPTV·온라인 매체 간에도 저작물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

[표 3-12] 방송영상물관련 저작권 분쟁사례 요약

구분	발생 연도	분쟁 사례
분쟁이 완료된 사례	09년	- 지상파 3사와 음악저작물사용계약체결 관련 저작권 위원회 조정결정
	08년	- 온미디어, CJ미디어, MBC미디어플러스와 방송실연자협회간의 분쟁
		- 공공채널(KTV, NATV, USB 등)과 방송실연자협회 간의 분쟁
		- 기타 자체제작이 존재하는 독립 PP와 방송실연자협회 간의 분쟁 - 온미디어 계열 방송의 판도라 TV, 기타 웹하드에서 불법유통된 것 차단 공문
	07년	- 투니버스, 챔프, 재능 등 애니메이션 채널과 방송실연자협회 간의 분쟁
05년	- 홈쇼핑채널과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협회 간의 분쟁 - 지역민방(제주방송, 강원민방)과 합의 후 고소 취하	
04년	- 케이블TV방송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협회 간의 분쟁	
분쟁 중인 사례	09년	- 최근 Mnet과 음원제작자협회간의 방송사용보상금 소송 진행(MTV 사례) - 지상파방송사와 SO 간의 디지털방송에서의 저작권료 징수 분쟁 - 지상파 라디오와 음원제작자협회 간 저작권료 징수 분쟁 - 방송실연자협회와 온미디어 간의 IPTV 진출에 따른 저작권료 추가 징수 분쟁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사례		- 신탁관리단체(음저협, 음제협, 음실연 등) vs IPTV - 신탁관리단체(음저협, 음제협, 음실연 등) vs 온라인 매체의 ‘전송’이나 ‘복제’

4) 유료방송 시장의 저작권 분쟁 원인

(1) 해외 수준의 저작료 인상 요구

현재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요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탁관리단체들은 해외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단계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구조의 문제

방송사업자들은 현재의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구조에 대해서, 이용자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비공개적 결정 구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3) 매출액 베이스의 지급 구조 문제

현재 매출액 베이스로 저작권료 및 음악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들은 매출액 베이스가 적정 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이며, 곡당 사용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 문제

신탁관리단체의 독점구조가 권리 남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탁단체 입장에서는 복수단체를 도입할 경우 장단점이 있으며 오히려 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5)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규정

신탁관리단체들은 사업자들이 이용자료를 신탁관리단체에게 넘겨야만 효율적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송사업자들은 신탁관리단체가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이용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IPTV사업자의 경우 과금자료 등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를 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방송법과 저작권법상의 개념의 차이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인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방송과 전송을 구별하면서 양자 간의 개념상 구분이 명확치 못한 영역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2) 영상물특례조항 제100조의 해석의 문제

방송사업자들은 영상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0조의 규정이 내용상 매우 불명확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IPTV사업자와 일부 신탁관리단체들은 현행 법규를 적용하여도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3) 저작인접권 주체간의 권리 불균형 문제

저작인접권 3주체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중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84조와 제85조는 타 인접권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가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업자들과 일부 신탁관리단체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IPTV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문제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항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7조) 규정의 문제

일시적 복제나 보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탁관리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6)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조항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에 대해 신탁 단체들은 권리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6) 융합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1) IPTV의 성격 규정문제

현행 저작권법상 IPTV는 방송인지 전송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다. 저작권료는 전송이 방송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IPTV의 성격이 저작권법상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재가공물의 저작권 문제

재가공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UCC에서 활용하는 음성이나 영상의 일부 이용이 있고, 둘째, 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하는 하이라이트 구성이 있으며, 셋째, 기존 콘텐츠에 입히는 T-Commerce 등 데이터 양방향 방송이 있다. 저작권 분쟁은 대개 첫째와 세 번째 형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폭도 큰 상황이다.

(3)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용이성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7) 융합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 및 개선방안

지금까지 유료방송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의 사례들과 분쟁의 주요 원인, 저작권법 상의 문제점, 그리고 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방송사업자들과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료

방송시장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의 지형도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분쟁 주체들 간의 갈등관계와 분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 내용들에 대해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해외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신탁단체들과 갑작스런 저작권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방송사업자 간에 당장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겠지만 양측이 상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의견수렴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유료방송시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TV와 같은 신매체의 경우 도입 이전부터 방송인가 통신인가의 논란이 많았는데 저작권이라는 경제적 시장에서는 방송인가 전송인가를 놓고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적 위상에 대해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콘텐츠의 재가공 문제는 지금까지의 부분적 이용이나 불법 복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OSMU(one source multi use) 또는 MSMU(multi source multi use)가 저작물 원천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업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법적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료방송 시장의 저작권 갈등구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콘텐츠 보유자인 지상파와 메이저 케이블PP 그리고 IPTV 사업자간에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료방송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저작물이용자인 방송사업자와 저작물권리자인 신탁관리단체 간의 갈등구도였다면 향후의 갈등은 저작물 권리자인 방송사업자(지상파, 메이저 케이블PP)와 저작물 이용자인 IPTV 사업자 간의 갈등구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방송사업자가 저작물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재 저작권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정부기관은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인데 방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개입이나 방관자적 입장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료방송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은 해당 방송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

는 것이며, 그 정부의 범주에는 지금까지 문화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일정 부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 관련 정부 기구인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부처 간 갈등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유료방송시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하여 저작권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의 업무영역을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유료방송시장, 특히 융합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정부의 범위와 역할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해외의 저작권 사례

1. 미국

1) 미국 저작권법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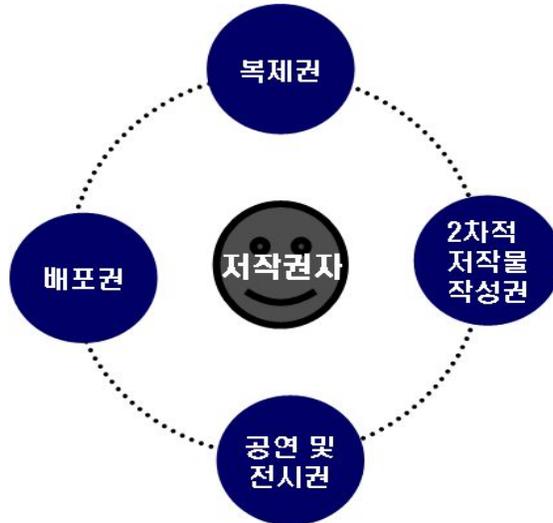
미국 저작권법은 1976년 개정을 통해 연방법이 되었다.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보호대상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문학적·예술적 표현물들로 어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영화, 녹음물, 컴퓨터프로그램, 건축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성(Creation)에 의한 독창성(Originality)과 표현이 유형 매체에 고정(Fixation)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 특히, 저작물의 고정성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물 보호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는 미국의 저작권법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³⁾.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연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고정화(Fixation)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저작권 법적인 보호를 정식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정윤경, 2008).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복제권(Reproduction), 2차적 저작물 작성권(Derivative Works), 배포권(Distribution), 공연(Performance) 및 전시권(Display)의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복제권이란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무한정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타인에 의한 본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원저작물,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저작물의 배포권이다. 마지막으로 공연 및 전시권이란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연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통제할 권리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라디오, TV등을 통한 방송은 물론이고

3)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Office Basics, <http://www.copyright.gov/circs/circ1.html>

IPTV나 모바일 및 인터넷 매체들을 통한 디지털 전송권 등이 추가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그림 4-1] 미국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의 권리



출처: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2006). p. 39

미국에서는 1995년 녹음물에 대한 디지털실연권법(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과 그 후 이를 일부 개정한 1998년 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이 제정되었다.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저작화 된 작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측정기준의 변경 제한과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그리고 법정허락의 대상을 확대해 케이블 가입 음악 서비스와 모바일, 위성,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해서도 법정허락 제도를 신설했다(윤호진 외, 2007). 즉, 주문형 이외의 디지털 송신에 대해서는 법정 허락제도를 마련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요컨대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웹캐스팅에 대해 면책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1998년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전면적인 저작권법 개

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정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지털 송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송신자는 특정 앨범에서 여러 곡을 연속으로 송신해서는 안 되고, 혹은 일정 시간 동안 재생목록을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실연이나 음반 관련 정보를 송신할 때 제공해야 한다거나 또는 수신자가 복제할 수 없도록 기술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요건들이 있다. 미 하원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이 음반의 상업적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음반권리자에게 디지털 송신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음반 판매에 가장 영향이 큰 주문형 쌍방향 송신에 대해서는 음반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비주문형 송신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권한(보상청구권)을 주면서 해당 송신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최경수, 2008).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이 시행되면서 권리자와 이용자들 간에 실질적으로 많은 충돌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가 법정허락 대상이 아니라 방송 송신으로서 이용허락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이용허락 면제는 지상파 송신의 경우에만 한정되며 인터넷 송신은 지상파방송과 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송신하더라도 이용허락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저작권청은 방송국에서 인터넷상의 송신의 경우는 이용허락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방송 송신은 FCC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에 의해 만들어진 송신을 말한다고 하였다(한정미, 2006).

미 법무부의 우려처럼 디지털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인해 최근 저작권을 두고 일어나는 일련의 분쟁들은 인터넷 사업자와 기존 미디어 사업자 간의 권리 충돌이거나, 혹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융합 콘텐츠를 사이에 둔 저작물의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대립인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 이와 같은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저작권 분쟁 사례⁴⁾

4) 본 연구의 미국 저작권 분쟁 사례 부분은 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 중인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와 지난 2009년 4월 30일에 발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동향과 분석』에 게재된 성민규의 '미국 저작권 최근 쟁점과 동향'을 통합하여 재정리하였다.

미국의 저작권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포털 사업자와 미디어 사업자 간의 분쟁과 음반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다. 포털 사업자와 미디어 사업자 간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포털 사업자가 미디어 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음반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핵심은 UCC이다. 이용자의 UCC제작이 증가하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음악이 분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음악물의 저작권자는 이용자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실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용자는 '공정 이용(fair use)'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입장에 대한 각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포털 vs 미디어 사업자: 검색 엔진 구글(Google)과 미디어 업체들과의 저작권 분쟁

미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업자인 구글은 지난 2007년에 서적 검색 서비스(Google Book Search)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고문 변호사 토마스 로빈(Thomas Robin)은 '구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들의 문제제기가 없는 한 모든 정보를 무단으로 구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구글이 직접 만든 콘텐츠 하나 없이 순전히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 서적 검색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계되었고, 이 서비스가 서적 판매 증가로 이어져 결국 출판사나 저자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하였다. 더구나 책의 목차와 서문 등 책 내용의 일부만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출판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결국 미국 출판 협회는 구글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의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글을 법원에 제소하였다.

출판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미디어 사업자와도 갈등이 발생하였다. 미디어 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로, 구글이 인수한 UCC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대해 기존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 TV

방송사, 영화사 등 메이저 콘텐츠 회사들은 유튜브가 자사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어컴은 구글에서 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구글 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뉴욕 지방법원은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바이어컴의 손을 들어주었다. 바이어컴 대 구글 사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Viacom v. Google 저작권 분쟁 미 법원판결⁵⁾

2007년 3월에 바이어컴사는 구글 사가 소유한 유튜브가 자사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10억 달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이어컴사는 MTV, Paramount, CBS등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이며, 유튜브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구글 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7월 2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바이어컴사가 유튜브 및 구글 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바이어컴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글 측에게 유튜브 사이트상의 이용자들의 동영상 시청 기록을 바이어컴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하였다.

바이어컴이 구글 사에 제기한 문제는 구글 사가 소유한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바이어컴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6만 건의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구글과 유튜브가 전반적으로 영상 콘텐츠의 보호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구글 측은, 유튜브를 통해 영상창작물이 제공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글측은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근거로 하여 불법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자사의 책임 면제를 주장하였다. 디지털 밀레니엄 법에는 포털 사업자가 불법 저작물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면 책임을 면제받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 구글 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삼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

5)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No. 1:07CV02103(S.D.N.Y. filed March 13, 2007).

다.

미국 내 몇몇 사회단체들도 ‘공정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구글 사의 편을 들어 주고 있다. 비판과 주장, 그리고 연구와 보도 목적 등 상업적 이익과 관계 없이 영상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 정책 (Fair Use Doctrine of Copyright Law)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영상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거나 주요 방송 매체의 방송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뉴욕 연방지법 루이스 스탠턴(Lewis Stanton) 판사는 구글이 아이디와 IP주소, 영상 콘텐츠 상영시간 등 관련 정보를 저작권자인 바이어컴사에게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영상콘텐츠의 저작권자인 바이어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법원 또한 유튜브에서 삭제된 동영상 리스트와 이를 삭제한 이유 및 삭제 동영상의 게시자 로그인 아이디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데이터들은 12테라바이트 상당의 분량이다. 바이어컴 측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자체 제작 동영상보다는 저작물의 무단 게시 수단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유튜브가 저작물의 무단배포에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그 청구 이유에서 밝혔다. 이러한 바이어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글 사는 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적이 있는 동영상 리스트와 게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유튜브 이용자와 사생활 보호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동영상 이용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일단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 보다는 저작권 소유자들의 권리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핵심적인 부분은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바이어컴의 실질적 경제적 손실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유튜브가 영상콘텐츠 제작자인 바이어컴이 제작한 창작물을 도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바이어컴 측은 이용자들의 로그인 관련 데이터 외에 구글의 동영상 검색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을 소송 과정에서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영업

비밀이라고 보고 바이어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송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2006년 10월에 일본 저작권협회와 22개 미디어 업체들은 유튜브에 불법으로 게재된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뮤직 비디오, 영화 등의 동영상 파일 3만여 개의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유튜브는 결국 3만여 개에 이르는 일본 업체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바 있다.

포탈 사업자와 미디어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이번 법원 판결은 디지털 밀레니엄법(DMCA)에서 포탈 사업자의 면책 조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앞서 콘텐츠 권리자의 보호를 우선시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법원이 미디어 사업자인 바이어컴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미디어 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동영상 이용자의 아이디나 IP 주소 등을 저작권자에게 넘기게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2) 음반사 vs UCC 동영상 제작자: UCC 저작권에 대한 최근 미국 판결⁶⁾

미국의 저작권 분쟁 사례 중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음반사와 UCC 동영상 제작자 간의 갈등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되돌려 받는 방식은 다름 아닌 저작권 침해를 만들었다고 간주된 사람들에게 그 경제적 손해의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이다(성민규, 2009).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유통, 즉 MP3와 같은 다운로드가 기술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음반사들은 자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 UCC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음반사들은 UCC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법원은 저작권이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고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한까지 제한하는 저작권자

6) 저작권위원회(2008. 9. 22. 발행)의 UCC 저작권에 대한 최근 미국 판결.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35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임.

들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 6월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주부가 자신의 아이가 춤추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주부는 동영상 가운데 배경음악으로 프린스 음악을 사용하였는데, 사용된 프린스 음악의 저작권자인 유니버설 뮤직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UCC삭제를 요청하였다. 유니버설 뮤직은 동일한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주부 외 200명에게도 유사한 경고장을 보내고 사이트 관리자인 유튜브에 비디오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이유로 주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저작권자들은 유튜브에서 동영상 삭제를 주장하기 전에 문제가 된 부분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시는 UCC라는 일반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에 이용된 음악에 대해서 ‘공정이용’이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를 우선시하고, 저작권 침해의 여부를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주었느냐를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자인 음반사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지나치게 이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공정이용’을 근거로 제동을 건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Sony BMG Music) v. Joel Tanenbaum⁷⁾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음악파일 유통이 활발해지고 일반 이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다운로드가 증가하면서 음반사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이들 일반 이용자들에게 부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의 테넨바움 사건으로 바로 소니 비엠지 뮤직(Sony BMG Music)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대학교의 한 물리학 대학원생인 25세의 조엘 테넨바움(Joel Tanenbaum)의 법적 공방이다. 이 사건은 테넨바움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디지털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소니 비엠지 뮤직이 저작

7) 성민규(2009)의 ‘미국 저작권 최근 쟁점과 동향’(『동향과 분석』. 09-07. 통권 294호)를 인용하였음.

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디지털 음악 파일 1개당 법적 최고 배상액 (compensation for statutory damages)인 15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소니 비엠지 뮤직 측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여 대학원생 테넨바움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찰스 네슨(Charles Nesson)과 그의 학생들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 네슨의 테넨바움 변론의 요지는 정당한 ‘공정 이용’이다. 네슨⁸⁾은 테넨바움이 저작물의 ‘공정 이용’, 즉 저작권의 배타적 적용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테넨바움 사건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하여온 현행 저작권의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또한 네슨의 공개 변론이 현행 저작권 ‘처벌 체제’가 갖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the Boston Globe)> 신문에서 전하고 있다.

현행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i)최대 법적 손해배상액(statutory damages)인 침해 사례 저작물 1건당 15만 달러에 더하여, (ii)저작권 침해자가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defendant's profits)과 그에 따라서 계산될 (iii)실제적 손실(actual damages) 등을 고려하여 판결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의 적합성을 다음과 같은 분류를 통해 검토한다.

첫째, 저작권에 대한 분명한 사전 개념 없이 법적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명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innocent infringers)로, 보통 법적 침해를 입은 저작물 1건당 250달러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둘째, 저작권에 대한 사전 개념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average infringers)로, 법원은 저작물 1건당 75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의 손해배상을 저작권 침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 침해의 분명한 의지와 의도를 확인한 경우(willful infringers)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고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다.

테넨바움 사건에서 논쟁의 중심은 이러한 현행 저작권법의 기준에서 볼 때,

8) 70세 노령의 교수로 현재 하버드 대학교 벌크만 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설립자이자 소장이다.

테넨바움의 사례가 법적 최고 배상액을 부과 받을 만큼의 저작권 침해 사례인가 하는 것이다. 보통 미국의 인터넷 디지털 음악 파일 다운로드의 경우 한 곡당 약 1달러를 지불한다. 테넨바움의 경우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을 개인 간 파일 공유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실제적 손실’을 야기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네슨은 이 점에 주목하여 법적 손해배상은 상업적 의도와 결과를 갖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적용되는 것으로, 테넨바움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데, 소니 비엠지 뮤직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테넨바움의 사례를 것처럼 다루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연방의회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저작권법 자체에 민사상(civil)과 형사상(criminal) 변제 모두를 비상업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주장하며, 여기에서 저작물의 상업적 배포는 오로지 저작권 소유자에게 국한된 권리이며,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거나 저작물의 합법적 구입에 따라 가격차별을 받을 수 있는 공중의 피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프리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그와 같은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법적 손해배상의 범위, 특히 ‘실제적 손해’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채택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부나 미국음반협회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9센트의 수익(혹은 일반적으로 음반 회사 몫으로 돌아가는 35센트의 수익)이 어떻게 750배로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거대 저작권 소유 기업들의 줄 이은 소송은 그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테넨바움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 판단 기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니 비엠지 뮤직 측에서 제시한 제의 청구가 얼마나 타당

하며, 이러한 경제적 손실액을 과연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분쟁에서는 주요한 논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실질적 손실에 대한 법적 판단과 손해 배상 수준, 그리고 그에 대한 갈등 당사자들 간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와 주장을 성동규(2009)의 글에 실린 새뮤얼슨과 위트랜드의 논문에서 제기된 열 가지 사례들과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UMG Recordings, Inc. v. MP3.com, Inc.>

2000년 유엠지 레코딩사는 인터넷 디지털 음악 파일 판매회사인 엠피스리닷컴사가 유엠지 레코딩사의 음악 CD 4,700여 장을 저작권 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MP3 파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유엠지레코딩사는 CD 한 장당 2만 5,000달러의 법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엠피스리닷컴사로 하여금 무려 1억 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유엠지 레코딩사에게 지불할 것을 판결하였다. 두 회사는 판결 직후 합의하여 배상액 규모를 5,340만 달러로 조정하였다. 소송 당시 엠피스리닷컴사는 자사가 구입한 CD를 소위 ‘ริป(ripped)’한 것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지나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의 규모가 어떤 증거와 기준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어떻게 합의된 최종 배상액의 규모가 법원 판결 배상액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나. <Columbia Pictures Television, Inc. v. Krypton Broadcasting of Birmingham, Inc.>

앨라배마 주 크립턴 방송사의 사장 엘빈 펠트너(Elvin Feltner)는 1997년 할리우드의 컬럼비아 스튜디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받았다. 크립턴 방송사는 컬럼비아 스튜디오가 제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저작권에 관한 합의 없이 방송했던 것이다. 법원은 저작물 1건당 2만 달러의 배상액을 명령하여, 총

880만 달러의 법적 배상액을 크립턴 방송사에 부과하였다. 크립턴 방송사는 항소하였지만, 배심원은 배상액 규모를 1심보다 훨씬 많은 저작물 1건당 7만 2,000달러로 정하여 총 3,100만 달러의 법적 배상액을 크립턴 방송사에 부과했다.

다. <Capitol Records v. Thomas>

2008년, 미네소타 주에 사는 제이미 토머스(Jammie Thomas)는 캐피톨레코드사로부터 개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디지털 음악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받았다. 당시 논란은 배심원들 사이에서 캐피톨레코드사의 '실제적 손해'의 규모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 배심원은 전체 실제적 손해를 약 50달러 정도로 보았는가 하면, 어떤 배심원은 음악 파일 한 곡당 750달러, 또 다른 배심원은 이를 15만 달러까지 보았다. 결국 법원은 제이미 토머스에 총 22만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판결 직후 양 소송 당사자들은 한 곡당 9,250달러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였다.

라. <LA Times, Inc. v. Free Republic>

2000년 4월, 보수 성향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프리리퍼블릭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자유주의적 성향의 뉴스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의 기사 몇 개를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평을 위해 저작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 프리리퍼블릭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1,0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 소송의 경우, 프리리퍼블릭이 신문 기사의 게재를 통해 어떤 상업적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저작권법상 모호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

마. <Lowry's Reports, Inc. v. Legg Mason>

렉 메이슨은 <로우리 리포트>의 구독자로, 이 간행물의 240여 기사들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위한 내부 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소송에서 메이

슨은 자신은 이 간행물의 구독자로서 연구 목적으로 기사들을 활용하였고, 이것이 분명한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은 이 주장이 이유 없다고 규정하고 저작물 1건당(즉, 기사 1건당) 8만 2,000달러로 총 1,970만 달러의 배상액을 부과하였다. 배심원의 결정에는 메이슨이 분명한 의도성을 가진 저작물 침해자(willful infringer)였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바. <Infinity Broadcasting Corp v. Kirkwood>

텍사스 주 델러스의 웨인 커크우드(Wayne Kirkwood)는 전화선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다이얼업(Dial Up)을 1996년에 개발했는데,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 기업인 인피니티는 이 기술이 자사의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중계함으로써 저작권을 합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송 결과는 커크우드가 주장한 공정 이용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인피니티에 적절한 배상을 이루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광고비를 지불 받는 방식으로 다이얼업을 통해 다른 라디오 방송 시장 지역으로 인피니티의 프로그램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실제적 손실을 규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위에서 다룬 다른 공정 이용 문제가 제기된 소송의 결과와 비교하여 피해 배상액의 규모에 대한 기준 문제가 특히 대비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라고 새무엘슨과 워트랜드는 덧붙이고 있다.

사. <Warner Brothers, Inc. v. Dae Rim Trading, Inc.>

1988년에 한국의 대림무역이 워너브라더스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장난감을 제조하여 제기된 저작권 소송으로, 당시 미국 법원은 대림무역에 100달러의 법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아. <Quinto v. Legal Times of Washington, Inc.>

1981년에 한 하버드 법대생이 이전에 학교 신문에 게재했던 기사를 <워싱턴

리걸타임스>가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신문에 게재하여 벌어진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원고인 하버드 법대생에게 250달러의 보상액이 적절하다고 판결하였다.

자. <Doehrer v. Caldwell>

1980년 정치자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던 캘드웰은 도허러의 만화를 자신의 캠페인 팸플릿에 넣었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았다. 하지만 새뮤얼슨과 위트랜드에 따르면, 당시 법원의 판결문 일부는 미국 저작권법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차. <U.S. Media Corp. v. Edde Entertainment Corp.>

이 소송은 의도가 충만한 저작권 침해 사례라고 하더라도 보상액의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안 된다는 원칙, 그리고 나아가 미국의 현행 저작권법이 그 적용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새뮤얼슨과 위트랜드는 주장한다. 이 사건은 에디엔터테인먼트사가 유에스미디어사가 제작한 성인 영상물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여 제기된 것으로, 법원은 그 의도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과 에디엔터테인먼트사가 불법 복제 및 배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계산하여 11만 2,700달러의 추가 이익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부과하였다.

위의 열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저작권법 체제에서 손해배상액 청구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는 상태이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적 측면이 강한 경향이 있다. 테넨바움의 사건 역시 특별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점에서 같은 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유통이 보다 활발해 지면서 이와 같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간의 권리의 충돌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저작권자의 지나친 권리 보호로 인

한 이용자 권한의 제한과 더불어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질 개인 창작 활동에 대한 제한이다.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는 포털이 저작권 침해의 논쟁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포털 사업의 불법 동영상 콘텐츠 관리에 관해 동영상의 저작권자인 미디어 사업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책임 논쟁이 직접적인 부분이라면, UCC 동영상 제작 시 배경음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든지,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포털 사업자라는 점은 간접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현 미국 법원의 입장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고등학생인 줄리엣 웨이브렛(Juliet Weybret)은 가수의 꿈을 키우기 위해 'Winter Wonderland'라는 크리스마스캐럴을 부르는 모습을 캠코더에 담아 자신의 유튜브 사이트에 올렸다. 그러나 웨이브렛은 유튜브로부터 자신의 동영상이 삭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유인즉 'Winter Wonderland'의 저작권자인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이 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유튜브는 이 요청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는 현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 업로더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사후 통보를 통해 저작권자의 요청에 우선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치이다.

한편 미디어 기업들은 자사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에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을 사업적 관계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즉 저작권과 관련한 인터넷 사업자와 미디어 기업 간의 일련의 관계는 법원에 대한 저작권 분쟁 소송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NBC가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 3천개 이상의 비디오 클립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NBC는 4개월 후 Saturday Night Live와 Jay Leno Show의 동영상 클립을 유튜브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년 7월 CBS도 유튜브에 동영상 클립을 제공하기로 하였다(우지숙, 2008).

이처럼 미국은 현재 포털 사업자와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사업자(특히 음반사업자)와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논쟁의 중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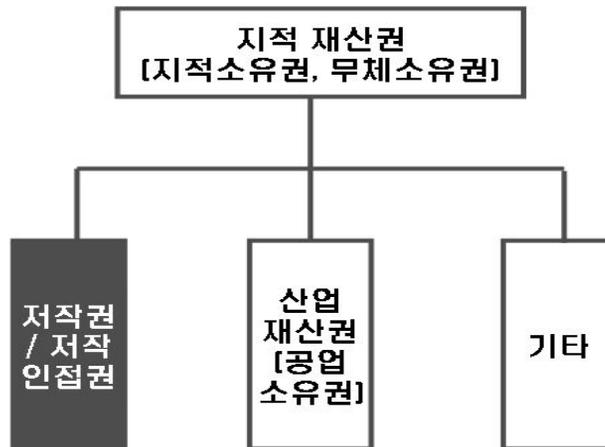
2. 일본

1) 일본 저작권법의 특성⁹⁾

일본은 저작권에 매우 엄격하며 적극적인 국가이다. 저작권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등록을 해야 비로소 권리가 생기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무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이 저작권 처리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엄격한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매년 막대한 권리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2차이용 시 매번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와의 협의를 필요한데, 이때 방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 등 이차적인 채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권리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작물의 원활한 2차적 활용을 위해 자연스럽게 저작권 제도가 중요하게 되었다(정운경, 2008).

[그림 4-2] 일본의 지적 재산권 체제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6). 일본저작권 선진시장정책연구

일본의 TV프로그램은 저작권/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은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과 관련이 있다.

9) 일본의 저작권 부분은 이상정(2008)의 '최근 일본의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008 봄호.55-73)와 저작권 위원회의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을 재정리한 것이다.

일본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식은 크게 방송국 직접제작, 제작회사와 공동제작, 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회사에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재방송권, 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TV방송의 공중 송신권을 갖고 있다.

[표 4-1] 방송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내용

저작물		권리내용
소설, 수필, 논문, 시가, 강연 등		- 원작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변안권],[저작자인격권]
방송극본(대본)		- 작가의 [복제권], [공중송신권],[변안권],[저작자인격권]
음악	기성음악(악곡)	-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역사가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저작자인격권]
	레코드(음원)	- 실연가 · 레코드제작자의 [복제권], [2차사용료 청구권], [송신가능화권]
실연		- 배우, 가수, 실연가, 낙어가(落語家), 모델, 일반인 등의 [녹음 · 녹화권], [방송권]
회화, 그림, 조각, 만화, 지도, 지형, 모형 등		- 회화, 사진 등의 [복제권], [공중송신권],[변안권],[저작자인격권]
영화, 영화소재		- 영화제작자의 [복제권]([방송권]) - 감독, 카메라맨 등의 [저작자인격권] - 원작자, 작가, 작사·작곡 등의 [복제권], [방송권]
기타		- 실연가, 연출가의 [초상권] - 이벤트 주체자의 [홍행권], [회장관리권] - 저작물 소유권의 [관리권] 등

출처: 김영덕(2006). p.13

저작물이 갖는 권리 내용 중 공중송신권¹⁰⁾과 송신가능화권¹¹⁾은 1997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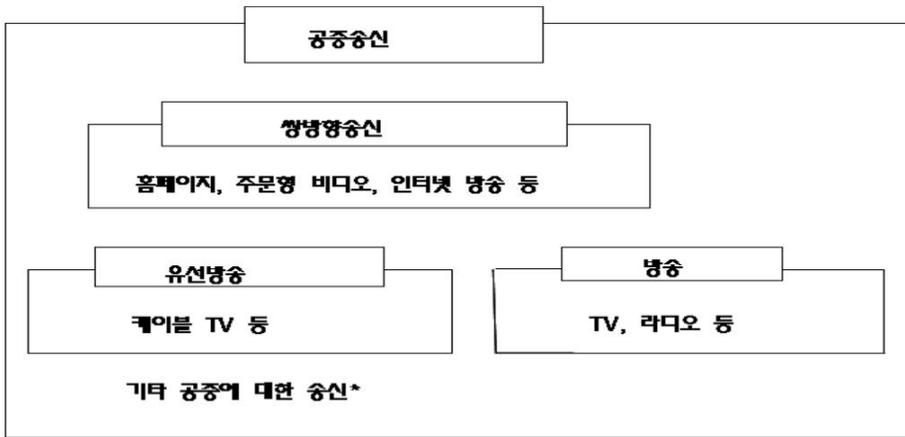
10) 공중송신이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유선전기통신시설비로 그 한 부분의 설치장소가 타 부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 내(그 구내가 2 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프로그램저작물의 송신을 제외)을 제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방송이란 공중 송신 중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11) 송신가능화란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되는 행위에 의하여 자동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월 18일에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LAN 등의 ‘네트워크’발달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유무선의 구별을 없애고 ‘공중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과 같은 공중에의 송신을 ‘자동공중송신’이라고 정의함과 아울러 모든 공중에의 송신을 ‘공중송신’이라고 하고 있다.일본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과 방송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일본 저작권법 상 용어의 정의



출처: 이상정(2008). p.62

일본에서 시대별 현안에 따라 저작권이 개정된 시기를 이상정(2008)은 크게 4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구법 시대로 구저작권법이 제정되고 1970년대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로 보고 있다. 제2기는 전면개정 시대로 1970년대를 일컫

한다.

- 가. 공중의 용에 제공되어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공중의 용에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그 기록매체 중 자동 공중송신의 용에 제공하는 부분(이하 본 호에서 ‘공중송신용기록매체’라 한다)에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서 추가, 혹은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 나. 그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고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대하여, 공중의 용에 제공되어 있는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 프로그램의 기동, 기타 일련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일련의 행위 중 맨 마지막 것을 말한다)을 행하는 것

는다. 제3기는 1990년대까지의 잦은 개정이 있던 시기로 소폭 개정시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제4기가 1990년부터 이때부터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시대로 현재 역시 제4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2] 일본에서의 저작권 개정 시기 구분

시기	개정 내용
제1기(구법시대)	1899년 구저작권법이 제정되고, 1939년 중개업법을 거쳐 1970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를 제1기로 보고 있다. 제1기에는 대략 10년에 한번 정보 개정이 있었다.
제2기(전면개정시대)	1960년대 전면개정을 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저작권제도심의회가 마련되고 1970년 전면개정에 이르게 된다.
제3기(소폭개정시대)	1970년 전면개정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다. 1978년 음반보호조약의 가입을 계기로 한 개정에서 1994년 WTO협정 체결에 수반하는 개정까지 1~2년에 걸쳐 잦은 개정이 있었다.
제4기(아날로그, 디지털 혼재의 시대)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저작권법은 격변기를 맞게된다. 대체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의미

출처: 이상정(2008). 재정리

제4기에 있었던 디지털·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법 개정은 쌍방향 송신, IP멀티캐스트, UCC,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콘텐츠와 관련된 것으로 각각의 시점에 행해진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쌍방향 송신과 1997년 저작권법 개정

일본의 1997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주목해야할 항목 중 하나는 「쌍방향(interactive) 송신」에 관한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의 신설 부분이다. 1997년 개정에서는 「쌍방향(interactive) 송신」의 발달에 대응해서 저작인접권의

일부로서 「송신가능화권」을 인정하였다. 저작자의 권리의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송신의 개념에 송신가능화를 포함시켰으나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해서는 「송신가능화권」을 신설하였다. 다만, 송신가능화가 행하여진 후에 일어나는 「송신행위」에 대해서는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또 다음의 경우 역시 송신가능화권은 미치지 않는다.

- i) 제91조 (1)항에 언급된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시각적 녹화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연
- ii) 제91조 (2)항의 실연으로 동향의 녹화물 이외의 다른 고정물에 녹음되거나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

(2) IP 멀티캐스트 방송과 2006년 저작권법 개정

2001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서 방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제정되어, 그 후 동법에 기한 IP멀티캐스트 기술을 사용한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이하 ‘IP멀티캐스트방송’이라 한다)이 저작물 등의 유력한 전달수단으로 되었다. IP멀티캐스트방송은 통신회선을 사용해서 행하는 것이나 대량의 정보를 안전하고 또 확실하게 시청자에게 송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형태이며, 종래의 유선방송과 대체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IP멀티캐스트 방송은 시청자의 요구에 응한 근처의 전화국내 등에 설치된 IP장치로부터 프로그램을 흘러 보낸다고 하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항상 시청자의 수신 장치까지 흐르고 있는 유선 방송과는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IP멀티캐스트 방송은 저작권법상 「자동공중송신」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의 유선방송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IP 멀티캐스트 방송과 관련된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입력형자동공중송신」에 의한 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방송대상지역 내에 있어서 동시재송신에 관해서는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실

연가 및 음반제작자에의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규정(제102조제3항~5항 관계).

- ii) 「유선방송」에 의한 방송의 동시재송신에 대해서는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에 새로이 보수청구권을 부여(제94조의2(신설)), 제95조제1항, 제97조제1항 관계).
- iii) 「입력형자동공중송신」에 의한 방송의 동시 재송신에 관한 저작권,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 방송대상지역내에 있어서 동시재송신에 관해서는, 「유선방송」에 의한 방송의 동시재송신과 마찬가지로 권리제한의 대상으로 됨(제38조 제2항 관계)
- iv) 그 밖에 동시재송신에 관한 개정

[표 4-3] 일본의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전·후 비교

	2006년 개정 전		2006년 개정 후	
	유선방송	IP 멀티캐스트 방송	유선방송	IP 멀티캐스트 방송
저작자	허락권	허락권	허락권	허락권
실연가	무권리	허락권	무권리→보수청구권	허락권→보상금
음반제작자	무권리	허락권	무권리→보수청구권	허락권→보상금

출처: 이상정(2008). p.68

IP멀티캐스트 방송에 관해서 2006년 개정에서는 오직 동시재전송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만 유선방송과 같이 다루고 있으며, 이시(異時)재송신이나 자주제작방송(자체제작방송)에 대해서는 유선방송과 다른 규정(規整)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고정과 같은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3) 2009년 일본 개정 저작권법의 특성

일본 저작권법에 있어 가장 최근의 이슈는 2009년 6월 개정 저작권법이다. 일본 역시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복제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에 대한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2001년 들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문제가 신중히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몇 차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2009년 6월 12일에 개정 일본 저작권법이 통과되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은 주로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전부터 일본정부에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의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 본부 내에 ‘디지털·네트워크시대의 지적재산권제도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에 대응되는 저작권제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재산추진계획2008’에 포함되도록 제안하였으며, 다음에 열거된 여섯 가지의 과제를 중심으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과제에 대해 검토를 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i) 현행 저작권법은 단일이용방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멀티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현행 일본의 저작권제도에서는 저작물 이용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생각과는 달리 허락권이 저작물의 유효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특정 미디어만을 고려하여 창작된 저작물을 사용자가 새로운 미디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다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리자는 이에 대한 권리처리 비용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권리의 집중관리의 확대 및 2차적 이용을 고려한 계약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적 해결을 시도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저작물의 유통을 비약적으로 촉진시키려는 관점에서는 법제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① 2차이용시 권리관계, 권리행사의 처리 문제, ② 저작물에 관한 권리정보의 정비, ③ 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에 대한 대응책, ④ 분명한 계약이 없던 경우 및 집중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대응책 등이 있다.

- ii) 디지털·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이용방법에는 대응불가함: 현행 저작권법상의 권리제한규정이 디지털·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이용방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검색엔진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환경이 정비되고, ② 연구개발 목적으로 디지털·네트워크 정보의 축적 등에 관한 법적 문제의 해결, ④ 도서관 등에서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환경의 정비, ⑤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응되는 법제도의 정비 등의 구체적인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 iii) 기술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위가 불분명: 신규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통신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이나 복제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iv) 블로그 등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상호이용하면서 창작하는 경우에 새로운 창작형태에 대한 대응이 불명확: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① 블로그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관련 규정의 정비라든지, ② 자유이용을 인정하는 권리자의 의사표시 시스템의 개선, ③ 여러 이용자가 작성한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관련 규정의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v)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출현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여도 유연하게 대응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①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이용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제한 규정의 도입이나, ② 저작물의 유통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 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vi) 네트워크상의 불법이용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저작권보호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② 외국의

ISP 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든지 ③ 불법이용을 반복하는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일본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첫째, 검색서비스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복제, 번안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둘째, 통신과정에서의 일시적 축적에 대한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저작권자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범위에 대해 저작물의 복제 및 번안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재권, 2008. 6. 9).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된 것이 지난 2009년 6월 12일에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일본 저작권법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으로 송신된 음악·영상을 저작권침해 행위인지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마련되었다¹²⁾.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송신가능화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일본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사용의 범위내’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동영상이나 음악이 업로드된 사이트로부터 저작권침해인지 알면서 다운로드 한 경우에 한해 일본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사용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둘째, 해적판 DVD 등을 불법복제물인지 알면서 옥션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출품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³⁾. 현행 일본저작권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에는 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작성된 물건 또는 수입물을 저작권 침해인지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②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작성된 물건 또는 수입물을 사정을 알고 배포의 목적을 갖고 소지하는 행위를 권리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배포의 전단계인 해적판의 양도의사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셋째, 저작물이용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로서 스트리밍 송신에 의한 캐쉬 및

12)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 중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복제권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일본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관련).

13) 일본 저작권법 제 113조

검색 엔진이 수행하는 복제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였다. 송신가능화된 정보에 관한 송신처, 식별부호를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그 기록을 이용하여 송신처 식별부호와 병행하여 자동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이처럼 2009년에 개정된 일본저작권법의 내용은 디지털·네트워크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의 원활한 저작물의 이용 모색과 함께 권리자의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일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건 역시 대부분 불법 다운로드 행위와 관련이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영상 및 음악의 불법다운로드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과 권리자 단체의 자체적 감시활동이 시작되었다.

(1) 불법사이트 다운로드

일본 문화청에서는 2007년 12월 8일 저작권법 개정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등이 업로드 된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사적사용)¹⁵⁾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불법 사이트인지 알면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저작권침해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저작권위원회, 2008. 2. 25).

14)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 6

15) 일본저작권법 제30조

저작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저작물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자가 복제할 수 있다.

(2) 실연가 단체의 ‘음악자경단(Music Guardings)’

일본 실연가단체는 2008년 6월 6일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삼고 있는 휴대전화, P2P사이트에 대해 감시·경고하기 위하여 ‘음악자경단(Music Guardings)’을 개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음악자경단(Music Guardings)’ P2P사이트 등에 대해 감시를 하고 법정집행에 앞서 해당사이트의 관리자 및 불법콘텐츠 업로드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에게 경고활동도 전개한다. 일본 실연가단체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일본에서도 한국, 미국, 독일과 동일하게 강제단속 및 사용자에게 대한 대규모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저작권위원회, 2008. 6. 16).

3. 영국

1) 영국 저작권법의 특성

1790년 영국의 ‘앤 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을 저작권법 효시로 하는 영국은 1911년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통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시작했다. 1951년 저작권 위원회(Copyright Committee)가 만들어지고, 1956년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되었다. 이후 1988년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1988)을 통해 영상물의 저작권 환경을 공고히 하였다(Barron, 2004).

[표 4-4] 영국의 저작물 범위

- o 표, 편집물,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 o 댄스와 마임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dramatic works)
- o 음악저작물(musical works)
- o 미술저작물(artistic works)
- o 음반(sound recordings)
- o 필름(films)
- o 방송용 프로그램(broadcasts or cable programmes)
- o 서체 배열(typographical arrangement of published editions)

출처: 정윤경(2008).

이중 방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관행적으로 영국의 방송 산업에서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권리를 흔히 '1차적 권한(primary rights)', '2/3차적 권한(secondary and tertiary rights)', '포맷 권한(format rights)'으로 나누고 있다(성숙희, 2006).

2)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분쟁

(1) 개요

2008년 3월, 온라인 광고 솔루션업체인 『폼(Phorm)』社は 영국의 3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BT, 카폰 웨어하우스(Carphone Warehouse) 그룹이 Talk-Talk, 버진 미디어(Virgin Media) 그룹 등과 제휴를 맺고 이용자들의 웹서핑 기록을 토대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대형 ISP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폼(Phorm)』社에게 인터넷 이용자들의 웹서핑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가로 광고 수익을 가질 수 있어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범서비스 실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정보보화 전문가는 ISP가 인터넷 이용자의 웹서핑 기록을 다른 업체에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고 자칫 이 정보들이 네티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2008년 8월, EU 집행위원회가 『폼이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가 개인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영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년 9월에는 영국정부가 『폼의 서비스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폼의 서비스가 EU의 정보보호 관련 법들을 침해하지 않았고 폼이 활용한 웹사이트 방문 기록이 특정인의 정보와 연관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맞춤형 광고와 연계(matching)하는데 사용될 뿐 폼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2) 쟁점: 『폼』社의 주장 편리한 서비스+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폼사(『폼』社)와 관련된 사건의 쟁점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들도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온라인 광고 시장에 역동적인 변화를 줄 수 있으며, ISP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이 가능하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는 정보만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뿐 이용자의 신상 정보나 무엇을 검색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웹 서핑 기록 정보의 경우 이용자 한 사람당 할당된 횟수만큼 검색(tracking)할 수 있도록 제한, 분석된 웹 서핑 기록도 광고와 매칭 된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는 웹 서핑 기록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선호, 건강상태, 인종적 문제는 물론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방문기록이 광고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므로 원천차단(blocking) 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폼사 위탁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웹 서핑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와 폼의 웹 사이트 시스템 간의 3차례 정도의 강제 연결 불법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 강제 접속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3) 시사점

이번 분쟁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 높은 온라인 광고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ISP가 넓은 의미에서 자사 가입자의 정보를 3자인 품의 수익사업에 이용해서 논란의 소지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 NTT 도코모, KDI 등은 휴대폰을 사용한 모바일 맞춤형 광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V. 방송영상물 관련 저작권 문제의 쟁점과 정책적 해결방안

1. 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주체가 다양화되고 품질 높은 방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까지 지나치게 높은 지상파방송 사업자 위주의 방송 콘텐츠 제작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91년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외주 제작 의무편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체편성 채널 이외에 외주 제작을 하여야 하는 편성비율이 의무화되게 되었다. 외주 제작비율 의무화 정책은 채널 증가에 따른 수요시장의 확대와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시장의 확대의 필요성으로 인해 성립되었다. 이 제도는 제작주체의 다원화, 창구유통의 활성화, 저작권 소유구조 개선, 생산부문의 경쟁요소 도입, 제작시설의 외부화, 독립제작사 육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김환균, 2006).

지상파의 외주 제작 비율은 시행 첫해인 1991년 3%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는 모두 30% 이상으로 고시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외부의 독립제작사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당시 방송위원회(현재 방통위)가 고시하는 법적 비율의 이상으로 방영하여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반대로 독립제작사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들을 방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외주정책에 의하여 방송영상산업의 재구조화와 다원적 공급주체의 육성을 통한 수용자 복지의 증진, 다채널 환경에 대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주체의 다각화, 방송영상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김광호, 2001).

하지만 독립제작사들은 극히 일부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반면, 지상파방송사업

자들이 거의 90% 이상(때론 100%까지)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어, 방송제작물이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이전된 후 추후에 인기가 상승하더라도 독립제작사는 2차 유통이나, 해외판권 등의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방통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중심이 되지 못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다시 콘텐츠 생산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이준근, 2006. 12. 1).

2) 이해관계인들의 주장

(1) 독립제작사 측의 견해

방송영상물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측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제1차 판권 이외에도 제2차 판권 및 해외 판권 등의 저작권이 독립제작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년간 독립제작사들은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며, 스타 중심의 편성으로 인하여 제작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드라마 등의 일부 인기 있는 프로그램 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액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후 당해 프로그램이 예상 외로 많은 인기와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주 제작사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은 외주 제작사들에게 2차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방송사업자들의 견해

방송사업자들에 의하면 비록 독립제작사들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외주 제작 비용을 법정하고 있는 방송법 때문에 방송사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공동제작’의 형식을 빌어서 독립제작사를 통해 제작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을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제작사측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독립제작사들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2차 관권이나 해외 관권 등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 방송사 전체의 광고나 이미지 마케팅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원활한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현재 외주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제작사들의 대부분은 인력, 장비, 유통망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에서는 디지털 융합환경하에서 방송산업의 글로벌화와 한류 등 자국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방송제작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는 독립제작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교육지원, 제작시설지원, 직접작인 제작비 지원, 세제 등 간접적인 제작비 지원, 프로그램 유통대행, 수출지원 확대, 외주 제작편성 비율 개선, 저작권 거래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정운경(2006, 360면)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학자들 간에도 외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외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①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지위 약화의 필요성(권호영 1998: 송경희, 1999; 조항제 1998;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9), ② 독립제작사 육성 필요성(김광호, 2001; 정동채, 1999), ③ 경쟁적 서비스 제공사업자 육성의 필요성(박천일, 2002; 이수영, 1999) 등에 근거한다. 대부분의 견해들은 수용자 복지의 제고, 다매체시대의 영상물 수요에 대한 대비, 방송영상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근거를 함께 들고 있다(이상의 논의는 조의진, 2006).

반면, 외주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① 수직적 통합의 비효율성 문제(김진웅, 2001), ②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복합적 요인의 무시(김재영, 2001),

③ 광고 및 방송시간 규제 문제(박소라, 2001), ④ 제작시장 육성의 협소한 해석(김진웅, 200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9), ⑤ 경쟁에 대한 맹신(김진웅, 2001), ⑥ 다매체 시대 영상시장 확대에 대한 의문(안광한, 2001), ⑦ 시대착오적인 내적 다원주의(김진웅, 2001), ⑧ 경쟁과 수용자 복지증진의 관계에 대한 의문(안광한, 2001; MBC TV 편성국, 2001) 등의 다양한 논리에 의해 현행 외주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외주정책 자체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외주 제작사들이 별도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외주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는 향후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와 현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

첫째, 완전외주 제작의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완전 외주형 계약’, 즉 방송사업자 측에서 인력, 음악, 영상, 시설 등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인도하는 형태는 민법상의 도급계약¹⁶⁾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지는 당사자인 ‘수급인’은 정하여진 시기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며, 물건의 제작이나 수리 등의 도급의 경우는 당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수급인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일을 완성해야 하며, 만일 일의 결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667조 이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67조).

16)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방송시장에는 이러한 외주 제작 형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외주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작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외주 제작사를 다수 양성하는 방향으로 제작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외부적으로 보기에 는 외주 제작사가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방송사업자가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해 질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의 독립제작사들은 방송사업자의 인력, 장비, 아이디어 등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물론 이것은 독립제작사들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아직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동제작의 관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 극히 일부분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시설, 인력을 이용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해 독립제작사들에게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독립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저작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의 지위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취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 선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다도 공동제작의 경우 대부분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해외 선진 각국의 방송사업자와 외주 제작사의 저작권 귀속관계에 대해서는 정윤경, 2006, 361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작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채널을 일정 기간 운영함으로써 독립제작 시장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한 이후 자유경쟁에 맡기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BBC의 경우처럼 이용계약방식(licensed commission)을 이용하여 당사자들 간의 저작권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

법도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에는 채널4는 제작비 전액을 방송사가 지급하고 저작권 역시 방송사에 귀속시키는 전액지급방식(fully funded commission)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BBC의 경우에는 위탁제작방식과 이용계약방식(licensed commission)의 방식으로 저작권 관계를 처리한다. ‘이용계약방식(licensed commission)’에 의하면 BBC는 지상파에 한해 5년 이내에 1회의 초방과 2회의 재방권한을 가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기타의 권리는 제작자가 소유한다. 또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자는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의 약 40%를 방영권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에 불구하고 BBC 역시 전액지급방식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용계약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정윤경, 2006: 361~362면, 방석호, 2004)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저작권료 및 음악사용료 지급관행의 변화가능성

1) 문제의 소재

현재 저작권자 및 음악저작권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케이블PP측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채널의 특성에 따라 0.1%에서 0.3% 정도의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에 따른 저작권료와 음악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케이블방송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저작권료 및 음악사용료 지급관행은 당해 방송사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견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행 매출액 기준 음악사용료 지급관행은 음악이 사용된 곡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방송사의 매출이 반드시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음악저작권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방송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둘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은 매출액과 음악사용량이 비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음악채널의 경우에는 음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악채널의 수익성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방송분량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장르의 채널(가령 음악채널)의 경우에는 과소하게, 반대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장르의 채널(가령 스포츠채널)의 경우에는 과도한 음악저작권료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PP사업자들은 음악저작권료를 현재와 같이 매출액 기반이 아니라 음악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3) 음악저작권자의 입장

음악저작권자인 음실연 등의 입장에서는 음악사용량에 의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방송사의 매출액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첫째, 음악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곡당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방송채널이 TV방송만 해도 200여개 이상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곡들의 총량을 하나씩 정리하여 곡당 단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곡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대

다수의 국가에서는 매출액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케이블PP사업자 측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음실연의 입장에서는 채널의 특성상 어떤 채널이 과연 음악기여도가 높은지에 따라 가령 음악채널의 경우에는 약간 높은 비율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저작권료 분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빈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음악과 관련한 분쟁이다. 음악저작권자 측에서는 매출액에 기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현행의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매출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음악이 사용된 양에 비례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음악저작권자나 방송사업자들 양측의 견해는 모두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음악이 어떻게 언제 사용되었는지, 또한 당해 음악이 전체 프로그램 나아가 방송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모두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지급되는 저작권료 중 음악관련 저작권료가 방송사업자의 사업이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과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방송사업자가 사업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때 일반적으로 수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에 속하지는 않는 듯하다.

3.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창구) 규정의 적용 문제

1) 문제의 소재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함)에 복제·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청구의 전제조건으로서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상대방(저작물 이용자) 측이 과연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 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7조에 위반하여 서류열람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이해당사자의 견해

(1) 보상금 수령단체 측의 견해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금수령단체 측에서는 저작물 이용자 측에서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서류를 열람하게 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들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법 제107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상금 수령단체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제107조의 서류열람의 청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7조 위반행위에 대해 적어도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둬으로써 관련서류의 열람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저작물 이용자 측의 견해

저작물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및 저작권법 제107조의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IPTV사업자나 디지털케이블TV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모두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IPTV와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익배분 문제가 불투명하지 않으며, 매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청자와 관련된 정보모두를 굳이 열람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러한 정보를 모두 열람하려고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방통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갖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음저협이나 음실연과 같은 민영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인하여 제출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현재 저작권자들은 IPTV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산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를 의무적으로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방송협회와 IPTV방송사업자 측에서는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 수익배분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보상금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망의 고도화로 인하여 디지털 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부터 무한한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들이 유·무선 통신기기들과 접목되어 다양한 유료콘텐츠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편리성과 간편성을 증가시켜 이용자들

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IP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들에는 무시하지 못할 단점도 다수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디지털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는 디지털화로 인한 편의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위협적이다.

우선 디지털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5-1] 개인정보 침해유형

개인정보침해유형	현행	문제점
부적절한 접근과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큼
부적절한 분석	부적절하게 수집된 정보의 분석, 동의 없는 사적 정보의 분석	부적절하게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개인 지배 또는 개인에 대한 통제 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부적절한 모니터링	동의 없는 개인의 인터넷 활동 모니터링	부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의 일상생활 등 개인의 생활 전반이 노출될 가능성이 큼
부적절한 개인정보유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적 거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큼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동의 없는 상품광고,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의 특성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구체적 상품광고가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음
부적절한 저장	정보수집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정보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저장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

저작권 관련 자료에는 개인의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후하다. ‘민감 정보(sensitive information)’라 함은 ‘누출이나 훼손되었을 때 정보의 소유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시스템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상당한 양의 자원을 다시 생성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정보’를 말한다. 미국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NTISSP 2) 어떤 정보의 누출, 변형, 파괴에 의해서

국가 안보나 지방 정부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민감 정보라고 한다.

이러한 민감 정보는 IPTV환경 내에서 보안과 보호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IPTV의 과금이나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청자 개인의 정보를 무작위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의 민감 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IPTV방송사업자나 케이블TV방송사업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하여 저작권료와 보상금산정을 위한 개인의 정보들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하여 IPTV사업자나 케이블TV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과금정보를 전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7조에 위반된다고 본다. 다만 107조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을 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에 대한 법적 개념 확정문제

1) 문제의 소재

현행 방송법 제2조 8호에서는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방송(무선방송)과 유선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방송이란 개념 속에 포괄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도 역시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단되지 않는 동일구역 내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은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공연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정의는 베른협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베른협약(1971년 파리개정규정) 제11조의2에서는 저작자의 방송권의 범위로서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또는 기호, 음악 혹은 영상을 무선으로 보내는 기타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개 전달하는 것과, 방송된 저작물을 원 방송기관 이외의 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공개 전달하는 것 및 방송된 저작물을 확성기 또는 기호, 음 혹은 영상을 전하는 기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공개 전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법 제2조 10호에서 “전송”이라 함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8조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중송신권”을 신설하였다.

실무적으로 현재 전송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신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료는 방송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하여 2배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각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IPTV 등 융합콘텐츠 영역에서 방송이라는 주장과 전송이라는 대립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분쟁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다.

2) '전송' 개념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최근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고(멀티미디어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규정하였던 일방향적인 방송물의 전달 개념이나 방송권 또는 복제권의 개념만으로는 모든 행위를 설명하고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게 되었다.

우선 방송의 개념은 1대 다수의 일방향 송·수신 형태이고 수신자가 모두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디지털화된 콘텐츠들은 이시에 다수 또는 소수의 이용자들에게 자유롭게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송권이나 복제권의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미국,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방송권이나 복제권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당시 디지털 송신을 방송 개념의 확대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장래의 기술 출현의 양상을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는 단계에서 포괄적인 개념을 설정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것만 허용하는 저작권법의 특징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저작권법 개정시에는 법제2조 제8호에서 ‘방송’의 정의를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법에서 괄호로 규정된 “차단하지 아니한 동일 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동시에”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방송의 전달이 동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는 방송과 후술하는 신설된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에 동시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연과 방송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2000년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새로 규정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방송의 개념을 확대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동시중계방송권과 복제권을 디지털 송신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규정된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중 전송권은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부터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저작권법에서부터는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제18조의2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전송권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시 제95조의5 권리침해죄를 신설하여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조항들의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송권은 당시 WIPO조약상의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개념은 당시까지 통용되었던 종래의 공연·방송·배포의 개념과는 달리 1대 1, 이시전송, 쌍방향성·무형성을 가지고 전달되는 유형을 총칭한다. 전송의 개념에는 직접송신 및 이용제공행위가 포함되지만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는 제외된다(김태훈, 2000, 3면).

3) IPTV 등 디지털방송 관련 예상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행법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하 IPTV법)에 의하면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IPTV는 분명히 ‘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시간방송(linear service)보다는 주문형서비스(non-linear service)가 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IPTV가 동시성과 이시성이 있으므로 당해 서비스들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즉 현재 전송이 방송저작권료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저작권료가 2배 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IPTV서비스는 대부분 일방향인 경우는 방송이고, 쌍방향인 경우는 전송이라고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송인 경우 효율이 두 배 정도 높은 데, 현재는 중간 정도로 합의를 한 상태이며, 이러한 합의안이 문화부에 승인 신청이 된 상태이다. 추후 당사자들 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문화부에서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효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디지털화된 영상·음성 등을 각자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가 과연 모두 총칭하여 방송(또는 전송)인지 아니면 개별 서비스에 대

하여 각각 별도의 서비스료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가령 디지털음성송신 정의에는 영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IPTV는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방송사가 영상을 제외하고 영상을 제외하면 VOD, AOD, 실시간 등을 송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이나 전송이나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영상항목을 제외하면 다양한 이용형태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료의 차이 때문에 방송 보다는 전송의 개념에 속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저작권사용자는 이를 방송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IPTV상의 서비스들에 대해 방송인지 또는 전송인지의 개념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저작권 주관부서인 문화부와 IPTV 주무부서인 방통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신설 문제

1) 문제의 소재

디지털환경 하에서 저작권법은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역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정보매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정보의 집적·이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장우영(2002)은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사용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으로 저작권관리시스템(Digital Right Management)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 있어 안정성, 유통성, 재사용성을 제고하여 저작권자, 유통업자, 소비자에 이르는 콘텐츠 관련 사업자들에게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신설하여 융합형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저작권의 집적·거래알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에게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경향, 디지털저작물의 형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저작물이 침해되는 양상, 저작권 관리정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의 보호, 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 디지털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공정이용의 원리 등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되는 여러 쟁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및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와 시스템의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 연구 결과 디지털 저작권의 신설과 거래시스템의 정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신설 및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 디지털 저작권 불법거래의 가능성 차단

이번 연구에서 디지털화된 저작권자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만 저작권자들은 과연 자신들이 제공한 디지털 원천 콘텐츠가 효율적으로 이용됨은 물론 복제·재가공 되는 과정에서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콘텐츠 보호 능력과 여기에서 거래된 원천 콘텐츠의 무단복제 및 이용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창의적인 저작물이 복제·저장·수정·배포 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과거의 그 어떤 기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터넷에 의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이용 되거나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배포 및 공유

를 용이하게 하고 있고, 저작물에 대하여 용이하게 해적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기술,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억제하던 요소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단 인터넷에 게재된 저작물은 무제한적으로 복제될 수 있으며 각 복제물은 원저작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과 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간의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창작자의 권리와 실제로 이용하는 자들 간에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책이 기술적인 변화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디지털 저작권자들은 무단복제의 위험성도 제기하고 있다.

만일 원천콘텐츠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제1차 저작물 이용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무단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 개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 상대방이 확실하다.

하지만 당해 디지털 저작물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무단복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 무단복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단할 장치도 마땅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 역시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2) 디지털 저작권 보호 장치의 완비

원천 콘텐츠가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에 제공된 경우 당해 거래소는 해킹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원천 콘텐츠 유출 시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현재의 보안기술로 이러한 콘텐츠 유출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사업자들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IPTV사업자들은 현재 TNS 등을 통해 만 가구 정도에 대해서만 개략적인 데이터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디지털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안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디지털 저작물(digital works)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자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디지털 환경 하에서도 디지털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저작물의 창조와 배포를 유도함으로써 인터넷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지만, 반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일반인의 접근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기술적 보호수단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의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저작권권, 저작권 또는 규정하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사용되는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있어서의 음 또는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다(이대회, 2003, 54면).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주로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침해 방지나 금지를 위한 과정, 처리방법(treatment), 기계적 작용(mechanism) 또는 시스템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기타 좌절시키는 도구나 제품 등을 수입, 제조, 배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실현된다.

EU의 경우에는 권리자는 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는 기술조치를 창안하거나 이용자가 일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을 대규모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용료에 따라 저작물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기술조치를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EU에서는 권리자에 의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예외나 제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보대 상세한 사항은 이대회, 2003, 35; 44면).

미국의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Right Millennium Act)¹⁷⁾에서도 역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에게 접근권 내지 접근통제에 대한 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DMCA 제1201(a)조에 제1(A) 항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연방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이러한 미국의

17) 미국의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1996년 채택된 WIPO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의 이행 및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8년 10월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화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DMCA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접근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 한 ‘배타적인 권리와 동일한(exclusive-right-like)’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9호,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¹⁹⁾”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역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행위 자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기술이나 도구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법의 입법태도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모두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DMCA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18) DCMA 1201(a) Violations regarding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1)(A) No Person shall circumvent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19) 지난 2009년부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통합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의 침해가 용이하며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원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집적하여 활용한다는 이유로 디지털 원천 기술을 모두 제공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보보안 기술과 자료보호를 위한 선행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제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제2차 유통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법과 행정조치가 불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이상에서는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관한 법리, 저작권 분쟁에 대한 판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국내법의 체계적 적용을 위한 유형화와 아울러 각 유형별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현행 저작권법의 법리에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미디어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아울러 법제 정비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구조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화와 멀티미디어화의 촉진으로 인하여 다매체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사슬구조에서 콘텐츠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디어 융합으로 인해 플랫폼별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프로덕션 간의 외주 제작 불공정거래로 인한 양 사업자간의 갈등이 콘텐츠 수급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 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외주 제작 의무편성 비율 조정 정책만으로 제작시장의 다변화나 제작역량의 강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빈번히 지적되어온 사항이었다.

하지만 향후 융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업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미디어 이론적 시각과 아울러 방송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과거보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각 미디어관련 종사자들의 입장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방안과 입법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유료미디어시장에서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집적하는 것이 매우 시급히 필요한 과제이다.

현재 미디어시장은 디지털화와 멀티미디어화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법률과 규제기관이 칸막이 식으로 분화되어 있어 그 규제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미디어 시장의 현황, 그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시장에서의 저작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제 정비방안은 고사하고 당사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유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의 저작권 관련 갈등상황을 반드시 저작권의 문제로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의 차원 내지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루어 관련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아울러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미디어시장의 특수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다른 모든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일반적인 법원칙이 존재하지만 방송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에 적합한 특별한 규제원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시장은 지상파광고시장이 다른 광고시장보다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유료방송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이 매우 협소하였다. 또한 저작권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관계 역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의 분쟁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료방송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상파방송시대의 공익성의 원리와 지상파위주의 저작권 정책에는 매우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상파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유료방송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전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시장의 위축이 불가

피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인정범위와 그 정도에 일정부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어느 편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공정경쟁과 사업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완전외주 제작의 경우에는 외주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완전 외주형 계약’, 즉 방송사업자 측에서 인력, 음악, 영상, 시설 등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인도하는 형태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외부적으로 보기에 외주 제작사가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방송사업자가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의 지위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취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통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저작권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익의 적정배분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저작권자 및 음악저작권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케이블PP의 단가 선정 및 저작권료와 음악사용료 지급 관행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케이블방송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저작권료 및 음악사용료 지급관행은 당해 방송사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음악이 어떻게 언제 사용되었는지, 또한 당해 음악이 전체 프로그램 나아가 방송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모두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지급되는 저작권료 중 음악관련 저작권료가 방송사업자의 사업이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따라서 음악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들 간의 수익배분방법은 다른 합리적인 방

법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와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저작권료와 음악사용료 지급관행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금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정보를 보상금수령단체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법 규정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채택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청구의 전제조건으로서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상대방(저작물 이용자) 측이 과연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조치를 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수령단체 측에서는 과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감 정보는 IPTV 등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안과 보호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을 통해 과금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과 전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주관부서인 문화부와 IPTV, 디지털 방송 등의 주무부서인 방통위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디지털음성송신 정의에는 영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IPTV는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방송사가 영상을 제외하고 영상을 제외하면 VOD, AOD, 실시간 등을 송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이나 전송이나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서 영상항목을 제외하면 다양한 이용형태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료의 차이 때문에 방송 보다는 전송의 개념에 속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저작권사용자는 이를 방송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IPTV상의 서비스들에 대해 방송인지 또는 전송인지의 개념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작업을 위

해서는 저작권 주관부서와 IPTV 등 디지털방송관련 주무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사용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정부정책은 지나치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환경 하에서 저작권법은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역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이를 이용하는 주체 간의 원활한 거래와 적정한 대가산정·지급업무 및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상에서는 현재 미디어 융합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대한 몇 가지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모두 현재 한국의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법제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 산업 내 저작권 분쟁 사례에 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으므로 사업자 및 정책기관에서 미디어융합 시장에서 예상되는 콘텐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권자의 보호나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아닌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적정한 이해관계의 배분을 통한 문화의 발전이다.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미디어업계의 현실을 저작권법의 원리에 맞추려는 이론적 노력보다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정경쟁의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광석(2005). 『외주 제작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태(2006).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권 2호. 96-127.
- 김대호(2007). 방송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방송연구』, 겨울호, 83~108.
- 김동규(2007).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실태 분석. 『방송연구』, 겨울호, 27~58.
- 김영덕(2006). '일본, 방송사와 제작사의 공생', 『KBI포커스』, 통권 7호, pp7~8.
- 김진웅(2008). 외주 제작의 상업화 현상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9-1호, 6~35.
- 김환균(2006). 방송제작시장 변화와 외주정책의 타당성, 『방송문화』, 2006년 10월호.
- 김현록(2008.10.8). '주몽', '이산' 편당제작비 2억3천.. 시사교양13배.
[www. star.moneytoday.co.kr](http://www.star.moneytoday.co.kr).
- 문화관광부(2004). 『2004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2008).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 연수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 박미애(2008.10.13). '엄마가 빨났다', KBS 외주드라마 中 제작비 최고.
[www. spn.edaily.co.kr](http://www.spn.edaily.co.kr).
- 박영길(2000). 저작권의 집중관리와 독점규제법의 관계. 『지적소유권법연구』 제4집, 167~185.
- 박영길(2002). 저작권의 집중관리주의. 『저작권연구』 창간호, 73~206.
- 박용진(2005). 『KBI 포커스: 2005년 지상파 방송3사의 편성분석과 그 함의』.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방석호(2004), 영상저작물, 방송과 저작권의 몇 가지 쟁점,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한국문예 학술저작권협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4. 11. 18.
- 방송위원회(2005).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2007). 『200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2008.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2호』.
- 방송위원회(2006). 『2005년 방송심의사례집』 .
- 방송위원회(2006).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 방송위원회(2007.12). 『방송통계자료집』 .
- 변미영(2004).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6개국 비교분석』. 서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성민규(2009). 미국 저작권 최근 쟁점과 동향. 『동향과 분석』. 09-07. 통권 294호.
- 성숙희(2006). ‘영국외주 제작 『시행규칙』 과 저작권’, 『KBI포커스』, 통권 15호.
- 안계성·조소연(1999).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보고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연합뉴스(2008. 10. 19). 대작드라마, 연예계 불황 탈출 해법되나.
www.yna.co.kr.
- 오승중·이해완(2000).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윤재식(2005). 『디지털 시대의 독립제작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우지숙(2008).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치 미국 패러디관련 판례의 시사점: 변형적이용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계간 저작권』 2008 가을호. 78~102.
- 윤호진, 윤재식, 박웅진, 정윤경(2007). 『방송콘텐츠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유형 분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보고서.
- 이대회(2003).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 저작권의 쟁점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 이상정(2008). 최근 일본의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008 봄호.55-73.
- 이영주(2007). 지상과 TV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문화적 가치와 발전 방안. 『지상과 3사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실태보고 및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문화연대 주최 토론회 자료집, 11~22.
- 이재권(2008. 6. 9). 일본에서의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제도 개정방향

- 공표.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21호』 2008. 6. 9. 발행
- 이재권(2009. 6. 22). 개정 일본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22호』 2009. 6. 22. 발행
- 이진우(1996). 멀티미디어 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계간 저작권』, 36호, 37~49.
- 이해완(2004).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보법학』 제8권 제1호, 113~161.
- 장재혁(2003).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한 고찰: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미·홍승필·김재경·박명환(2008).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9권 제7호, 145~150
- 정상조(1999). 저작권의 공동보유.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2호, 207~241.
- 정중섭(2007).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5).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3): 일본편』.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6). 『미국 저작권 선진시장 정책 연구』.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6). 『일본저작권 선진시장정책연구』.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저작권위원회(2008. 2. 25).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6호』 2008. 2. 25. 발행
- 저작권위원회(2008. 6. 16). 일본 실연가단체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감시를 개시.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22호』 2008. 6. 16. 발행
- 저작권위원회(2008. 7. 7). Viacom v. Google 저작권 분쟁 미 법원판결.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25호』 2008. 7. 7. 발행
- 저작권위원회(2008. 9. 22). UCC 저작권에 대한 최근 미국 판결.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35호』 2008. 9. 22. 발행
- 정윤경(2005). 『저작권과 방송콘텐츠 유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윤경(2006). 국내 독립제작사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독립제작사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5호. 345~382

- 정윤경(2008).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포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초연구』. 2008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포매팅 R&D 연구보고서
- 정준희(2005. 4). 英 슈퍼 독립제작사들, 호황. 『해외방송정보』, 통권 683호. 46~53.
- 조의진(2006). 방송 외주정책과 저작권 귀속 논쟁에 대한 연구 -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4호, 337-370.
- 지성우·김영욱(2005).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서울: 한국언론재단.
- 지성우·최민재(2008). “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위한 재산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법학논총』, 제32권.
- 지성우·최민재(200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저작권과 UCC”, 『방송과 커뮤니케이션프로그램적작권과 UCC』 93.
- 최경수(2008). 공중송신 개별 이용형태에 대한 권리. 『방송문화』 2008년 12월호 44-47.
- 최필선(2003). 『독립제작사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상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언론재단(2007). 『한국신문방송연감 2007』.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정미(2006). 『방송콘텐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허희성 외(2004).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홍성원(2002. 5). 외주 제작업무와 방송저작권. 『방송문화』, 105~107.
- 홍승기(2005.4.8). 한류와 저작권. 『KBI News』.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Easton, E. B. (2004). “Who owns the first rough draft of history?”,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2004. Summer.
- Einhorn, M. A.(2005). *Media, Technology And Copyright: Integrating Law And Economics*. Edward Elgar Pub.
- Gervais, D. (Eds.) (Editor)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 Haupt, S. (2004). “Die EG-Richtlinie “Urheberrecht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und

Konsequenzen für die Nutzung von Werken im Schulunterricht gemäß §52 a UrhG”, ZUM 48, S. 104ff.

Henn, H.(1988). *Copyright law: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Practising Law Institute.

Head, Spann, & McGregor (2001). *Broadcasting in America : A Survey of Electronic Media* (9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Herrmann, Günter(1975). 『Fernsehen und Hörfunk in der Verfassung des Bundesrepublik Deutschlands』 , Tübingen.

Herrmann, Günter(1994). 『Rundfunkrecht』 , München.

Malkan, J. (2005). “What is a copy?”,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Schippan, M.(2003). “Urheberrecht goes digital-Das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ZUM 47.

Sinacore-Guinn, D.(1993).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 International Practices,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Aspen publisher.

U.S. Copy right Office, Copy right Office Basics

<http://www.copyright.gov/circs/circ1.html>

<http://www.bpi.co.uk>

<http://www.fastcase.com>

<http://www.findlaw.com>

<http://jva-net.or.jp>

<http://www.sacem.fr>

<http://sesam.org>

VII. 부록

□ 조정 조서

- 사건: 2008조정46 음악저작물의 방송사용료에 관한 분쟁
- 신청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피신청인: (주)에스비에스(SBS)

□ 조정 조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 2. 22. 에 통보한 첨부 중재안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2. 피신청인이 전항에 따라 체결한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면, 조정 성립일 이후 제3자로부터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된 본건 음악저작물 사용계약 관련 지급청구 및 소송 등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송에 보조 참가하고, 피신청인에게 금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이 당해 금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3. 전항 기재 '제3자'의 범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4.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간 음악저작물 사용료 협의 관련 문화관광부 중재안

● 연간포괄사용 계약

1. 음악저작권 사용료 산정

- 매출액 × 1%(음악사용요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EBS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 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 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정계수	0.46	0.52	0.58	0.65	0.72

3)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협회 또는 방송사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97%로 본다.

4) 음악저작권 사용료 총지급액은 전년도 총지급액 대비 8.5%이상 증가할 수 없다.

5) 지역문화방송의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최종 산출된 음악사용료에서 5%를 감액한다.

6) 제4항 및 제5항은 2008년도부터 적용한다.

2. 협회의 관리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

1) 방송사가 행하는 방송 및 주최하는 공연에서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2) 방송을 목적으로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3) 제2항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것

①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및 공중송신을 위한 제공

② DVD, 차세대 DVD, 디지털파일 등의 형태로의 복제. 단, 복제물의 배포는 제외한다.

③ CCTV, 항공기 등에서의 상영을 위한 제공

④ 방송사 및 관계 회사 내부 업무에 있어서의 사용

- ⑤ 프로그램, 방송의 보급 및 이해 촉진을 위한 사용
- ⑥ 방송기술 연구를 위한 실험 및 연구 성과의 소개를 위한 사용
- ⑦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 또는 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견본시 장에의 출품
- ⑧ 방송사 및 관계회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의 사용
- ⑨ 사회봉사 목적 단체에의 제공
- ⑩ 학교, 비영리기관에의 제공
- ⑪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박물관,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등에서 시청을 위한 제공
- ⑫ 출연자, 작가 등 프로그램 기여자에의 제공
- ⑬ 기타 상기의 경우에 준하는 목적의 사용

4) 제1항 내제 제3항의 사용에 있어 그 사용에 수반되는 관리저작물의 복제를 포함하며, 방송형편상 관리저작물을 편곡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방송사’는 저작권격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의서 적용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며, 2012년부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이용허락 범위 등은 2011년 방송사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기준으로 다시 합의하기로 한다.

4. 협회와 방송사는 합의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갱신하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협회와 방송사는 방송 및 음악저작권 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 활동,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음저협)은 2006. 12. 14 신청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외국 평균 사용료의 60% 수준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라’라는 조정을 구함.

1. 사실관계

- 2003. 12. 10부터 2005. 12.31까지 신청인의 관리저작물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협회는 지난 1988년부터 지상파3사와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포괄방식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하지만 2006년 협회와 지상파3사 간 지난 1994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14년 간 음악사용요율이 동결이었다는 점 및 우리나라의 음악사용요율이 외국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문화발전을 위해 현행 사용요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음.
- 그 뒤 2006. 12.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2006년도의 사용료는 2005년도의 사용료에 2억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점, ② 2007년 이후 사용료의 합리적인 산출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트팀을 설치·운영한다는 점, ③ 음악사용료를 태스크포스트팀 운영기간 동안 조사된 결과의 평균 60%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점, ④ 태스크포스트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회와 방송사는 문화관광부가 중재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 등의 사항이 합의되었으며, 동 합의서에 따라 지금까지 별도의 사용료 협의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왔음.

2. 피신청인의 주장

- 2003. 12. 10부터 2005. 12.31까지 신청인의 관리저작물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별도합의서에 따라 2006년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였고, 계속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에 따르면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협회 또는 방송사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97%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협회에서 제명된 모두컴의 음악 이용비율을 고려

하여 저작물 관리비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른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함.

3.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에 대하여

- 문화체육관광부 중재안의 내용은 매출액의 1%를 음악저작권 사용료로 하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조정계수를 곱하고,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당사자간 입증하지 않는 한 97%로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음저협은 이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함.

가. 사용계약의 주체와 관련하여

- 사용계약의 주체는 피신청인과 신청인이므로, 신청인과 체결된 사용계약은 신청인이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될 것임. 다시 말하여, 사용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신청인이 관리권한을 가진 음악저작물일 뿐이므로 신청인이 전체 음악저작물 중에서 어느 정도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관리하는가는 본 사용계약에서 고려될 필요가 없는 요소인 것임.

나. 관리저작물의 변동과 관련하여

- 신청인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은 매일매일 변동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관리비율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피신청인이 주장하듯이 모두컴이 협회에서 제명됨으로써 모두컴이 관리권한을 가진 음악저작물만큼은 신청인의 관리비율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비슷한 시기에 외국 저작권단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많은 음악저작물을 새로이 관리하게 되었고, 또 매년 신규 음악저작물의 수가 최소 2만곡이상 늘어남에 따라 관리비율도 상향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신청인 협회의 관리비율이 증가일로에 있음.
- 또한 피신청인의 논리에 따르면, 관리저작물이 증가하면 관리비율을 증가하

여야 할것인데, 과연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할 것인지 의문임. 나아가 신규 음악저작물 및 위탁 저작물의 증가로 관리비율이 상향되는 경우 사용료도 증액되어야 할 것이고, 관리비율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신규 저작물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므로)사용료를 변동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5년이라는 장기계약을 엄두에 두고 있는 사용료계약의 특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음.

다. 종전 사용계약 및 외국 사례의 검토

- 2005. 12. 31.까지 효력이 인정되었던 종전 사용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전체 음악저작물 중 신청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관리하고 있는지 등 관리저작물의 증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오히려 신규 관리저작물의 변동 및 외국저작권 단체계약의 변경이 있을 때에 사용료의 조정과정은 없이 변경사실만을 사후에 통보하고 있는데(제5조), 이는 종전의 경우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관리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음.
-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구성한 태스크포스트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국에서 저작권단체와 방송사사이에 사용계약 체결함에 있어서도 포괄계약의 성격상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라는 항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도 사용계약에 있어서 관리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옳바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라. 정부의 중재안 거부

- 이와 같이 사용계약의 당사자나 성격, 관리저작물의 변동성, 종전 사용계약 및 외국사례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작물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관리비율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용료 산식에 ‘관리비율’이라는 항목을 추가한 중재안을 제시함.
- 신청인은 이러한 중재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맺은 합의서 정신에 따라 위 중재안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전혀 엉뚱하게도 모두컴의 제명을 빌미로 중재안에 다른 사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의 중재안 거부라고 판단하여, 2009. 1.1.부터 신청인의 관리 음악저작물의 사용금지 통지를 하였음.

4.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하여

-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맺은 합의서에 의하면, 태스크포스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중재안에 따라야 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인으로서도 중재안의 관리비율 항목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위 합의 정신에 따라 기꺼이 중재안을 따르기로 용단을 내린 것이므로 더 이상의 양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저작권법상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고 서로 상생하는 파트너십 관RP를 유지해보고자 하는 취지임.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성실히 조정에 임하겠음.

5. 결론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음악저작물의 상요중지하는 극단적 조치의사를 밝힌 이유는, 피신청인이 모두컴의 주장을 근거로 정부 중재안을 무시하고 너무나 어이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율의 하향조정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마냥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
- 피신청인이 음악사용료의 인하에만 열을 올려 결국 그 뜻을 관철시킨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즉 이러한 경우, 신청인에게 저작권의 권리를 위탁한 수많은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신청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신청인 협회에서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피신청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인바, 이때 피신청인은 음악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하기에 앞서 일일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아 개별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 그 비용도 신청인 협회와 포괄·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액을 지불해야할 될 것임.

- '외국에서 조사된 평균사용료의 6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라는 합의정신을 되새겨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되기를 바람.

방송통신위원회 자유 2009-01

융합시장의 콘텐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발행일 2009년 12월 (비매품)

발행인 최시중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세종로100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 webmaster@kcc.go.kr

Homepage : www.kcc.go.kr

인쇄처 프레스원
